

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2026. 1.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목 차

< 용어 정리 >

제 1장 사업 개요

1. 개요	1
2. 사업 추진체계	3
3. 전문기관 역할	4
4. 사업 주요내용	4
5. 사업 참여방법	5
6. 업무 처리절차	5
7. 성과 지원	10
8.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안내	13

제 2장 사용자별 이용절차

1. 국민	15
2. 의료기관	17
3. EMR 업체	26

제 3장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1. 기술적 보호 · 보안조치	30
2. 서비스 변경 신청	33
3. 사용자 권한 관리 체계	34
4. 개인정보 파기	37

제 4장 상담센터 운영 및 민원관리

1. 개요	39
2. 상담센터 운영	40

제 5장 사업 평가

1. 개요	42
2. 성과관리 방안	43

[붙임] 서식 및 참고자료

[서식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변경·해지 신청서	44
[서식 2] 교류객체등록번호 신청서	45
[서식 3]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46
[서식 4]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 부분·전체 철회서	49
[서식 5]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사전협의 요청서	50
[서식 6]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의료기관 간 표준협약서	51
[서식 7]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의료기관 간 협업 현판 표준 규격	53
[서식 8]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API) 이용·변경·해지 신청서	54
[서식 9] 표준연계모듈(API) 적용에 대한 보안서약서	55
[참고 1] 거점 의료기관 현황	56
[참고 2]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 EMR 현황	58
[참고 3] 전자교류문서 상태정보	60
[참고 4]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가입절차	62
[참고 5] 개인정보 파일 현황	65

용 어 정 리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거,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진료정보

- 개인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등 진료 과정에서 생산·수집되어 의학적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포함

● 진료정보교류

- 환자의 진료 시 의료인이 생성한 진료기록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공공서비스 연계기관 간 전자적으로 교류문서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

● 영상정보교류

- 환자의 진료 시 의료인이 생성한 CT, MRI 등 영상정보를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공공서비스 연계기관 간 전자적인 방식으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 환자의 진료 시 의료인이 생성한 진료기록의 전송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 ① 문서등록소, ② 환자식별체계, ③ 환자동의서·철회서 관리, ④ 감사 로그, ⑤ 문서저장소, ⑥ 영상정보저장소, ⑦ 진료정보교류 누리집 등으로 구성
※ ① 문서저장소에서 문서를 식별하기 위한 메타정보(문서 종류, 위치 등)를 기록·관리
② 진료정보교류 시 주민번호와 같은 환자식별정보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식별번호
③ 환자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동의 및 철회 시 정책 관리
④ 의료기관에서의 교류문서 생성 및 열람 시 감사기록 등의 보안정책
⑤ 진료정보교류 문서를 저장·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공공저장소
⑥ 의료기관에서 전송한 DICOM 표준의 영상파일을 저장·관리하기 위한 공공저장소
⑦ 국민, 의료기관, 업무관계자 등의 진료정보교류 업무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누리집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진찰,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여 입력, 관리, 저장하는 정보시스템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 CT, MRI 등 디지털 의료영상 이미지를 의료영 디지털 영상 및 통신 표준에 맞게 저장, 가공, 전송하는 시스템
- **진료의뢰서**
 -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의뢰 시 송부하는 서식
- **진료회송서**
 -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회송 시 송부하는 서식
- **진료기록요약지(CRS: Care Record Summary)**
 - 의료인이 생성한 진료기록부의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의료인 간에 교환하기 위한 서식
- **영상의학판독소견서**
 - CT, MRI 등 영상의학 정보의 판독 결과를 다른 의료인에게 송부하기 위한 서식
- **자료요청서**
 -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공공서비스 연계기관*이 의료기관에 진료정보 전송을 요청하기 위한 서식
 -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 **자료회신서**
 - 진료정보 전송을 요청받은 의료인, 의료기관이 요청기관으로 회신하기 위한 서식
- **진료정보 연계모듈**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일반적으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에 적용
- **영상연계모듈**
 - 영상정보교류를 이용하기 위한 표준 API로 DICOM 영상 파일의 업·다운 로드 등 기능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적용
- **표준연계모듈**
 - 진료정보·영상연계모듈을 통칭하는 용어

- 전자교류문서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성한 전자문서

- 진료정보교류표준 적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 진료정보 연계모듈이 적용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 교류객체 등록번호(OID: Object Identifier)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서 참여 의료기관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식별번호

- 환자식별체계(MPI: Master Patient Index)

-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환자식별정보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식별체계

- 임상문서구조(CDA: 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 의료정보의 전자적 교환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HL7)에서 제시하는 문서의 구조를 정의한 진료정보교류사업 표준규격

- 문서등록소(Document Registry)

- 의료인이 생성한 진료정보교류 문서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메타정보(교류 문서종류, 교류문서위치 등)를 기록·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 문서저장소(Document Repository)

- 진료정보교류 문서를 저장·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되는 저장소

- 영상정보저장소

- 의료기관에서 전송한 DICOM 표준의 영상파일을 저장·관리하기 위한 저장소

- 영상정보 웹뷰어

- CT, MRI 등 수신된 영상파일을 조회하기 위해 제공되는 웹브라우저 뷰어

-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 진료정보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 의료기관, 업무관계자 등에게 정보 제공과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URL: <https://mychart.kr>)

제1장 사업 개요

1 개요

□ 개념

-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때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 영상 정보 등의 전자적 교류를 지원하는 시스템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필수)

□ 목적

- 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교류를 통한 진료 연속성 확보, 진료비 절감 등으로 환자 편의 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 사업 대상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
-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공서비스 연계기관
-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일반 국민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대상 시스템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공공서비스 연계기관 간 진료정보(영상포함)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시스템
 -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에 진료정보 연계모듈 적용 필요
 - 영상정보 교류가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의료영상저장전송 시스템(PACS)에 영상정보 연계모듈 연동 필요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 의뢰·회송서 등 전자교류문서를 작성,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개선 필요
-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 CT, MRI 등 의료영상을 저장,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영상정보교류를 위해서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개선 필요

□ 사업 운영현황

-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현황('25.10월 기준)
 - 영상정보교류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에 추가 기능 탑재가 필요하여 진료정보교류 참여 중 일부 기관만 참여 중임

(단위 : 개소, %, '25.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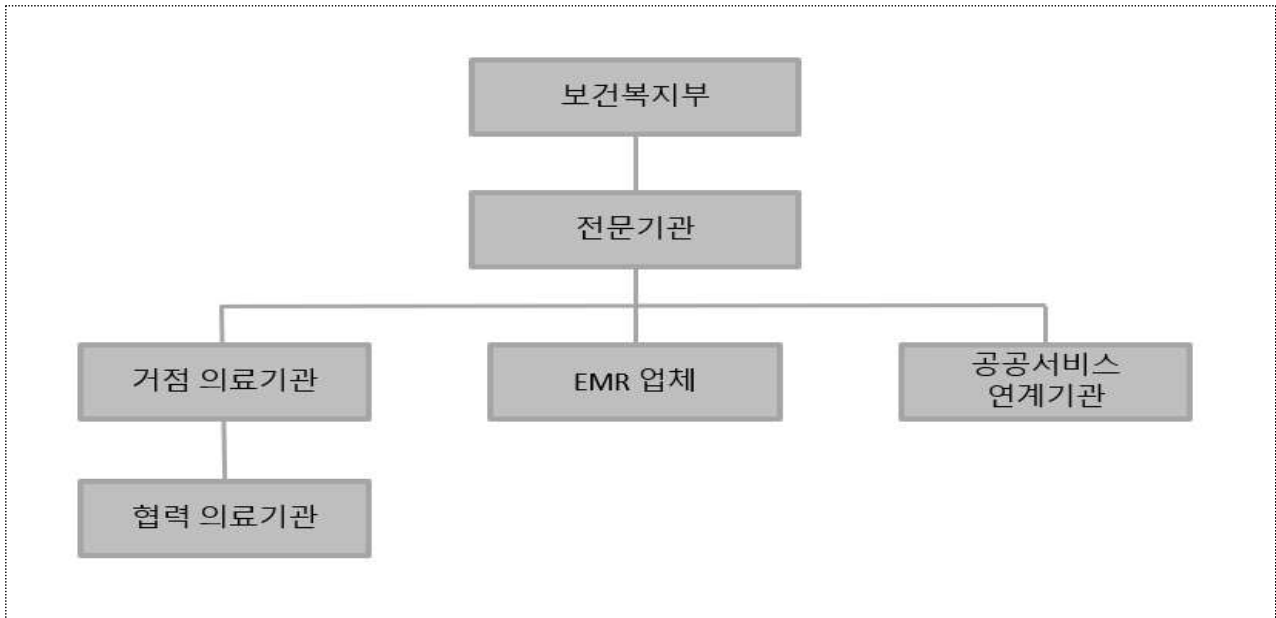
구분	합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기타**
전체 의료기관(A)*	40,959	47	333	2,766	37,298	515
참여 의료기관(B)	9,890	47	247	1,195	7,886	515
진료정보	9,890	47	247	1,195	7,886	515
영상정보	590	43	176	159	203	9
참여율(B/A)	24.1	100	74.2	43.2	21.1	-

*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 기준: 2025.8월

** 치과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 기타 기관 515개소 참여 중

2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도



□ 기관별 역할

추진주체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 총괄 및 전문기관 감독
전문기관	진료정보교류 사업 및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수행
거점 의료기관	- 의뢰환자 접수 및 진료 - 진료회송 대상자 결정 및 진료의뢰·회송서 작성 및 송부 - 협력 의료기관 모집 및 관리·운영
협력 의료기관	- 환자 진료(진단) 및 의뢰 결정 - 타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서 작성 및 송부
EMR 업체	- 표준연계모듈 적용 및 유지보수 - 진료정보교류 사업 활성화
공공서비스 연계기관	근로복지공단(산재판정), 국민연금공단(장애판정)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요청하고 수신하는 기관

3 전문기관 역할

□ 전문기관 위탁

- 전문기관 :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위탁 근거 :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4항
- 주요 업무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수행

□ 전문기관 준수 사항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 금지
-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 금지
- 기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사업 주요내용

□ 환자 전원 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공유 지원(의뢰·회송)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에 저장된 진료기록(검사결과, 약물 처방내역 등) 첨부한 진료의뢰·회송서 작성 및 전송(영상정보 포함)

□ 환자 진료기록요약지 생성·관리

-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 알리지, 흡연정보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한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및 관리

□ 공공서비스와 연계를 통한 진료기록 서류 제출 간소화

- 병무청(병역판정),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 등 업무 수행에 진료기록을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와 연계하여 전자적 진료기록 송·수신 지원

5 사업 참여방법

구분	신청 자격	신청 기간
거점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상의 공공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의 후 상시 신청 ※ 단, 공모 및 지정에 의한 참여는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해당 일정은 보건복지부.전문기관 홈페이지 확인 요망
협력 의료기관	의료법 제21조2의 3항에 따라 진료 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진료기록 송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협의 후 상시 신청
EMR 업체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EMR 솔루션 보유 업체	전문기관과 협의 후 상시 신청

6 업무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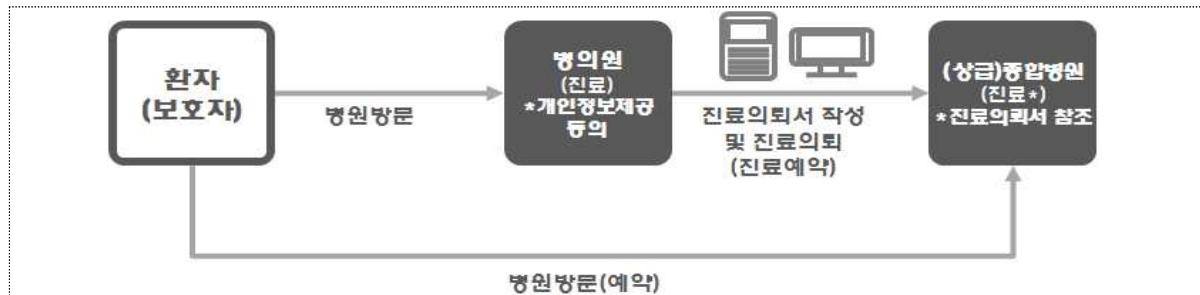
< 의뢰·회송 >

☐ 공통사항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뢰·회송할 수 있는 대상은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함
-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는 아래 방법을 통해 가능
 - (방법1)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동의서 제출
 - (방법2)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에 접속하여 사전 동의

□ 진료 의뢰

- (정의) 환자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 진료를 의뢰하는 행위
- 업무절차



- ① 환자가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료인에게 진료 요청
- ② 의사의 판단이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 결정
- ③ 표준연계모듈이 설치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을 이용하여 진료기록이 포함된 환자의 진료의뢰서 작성 및 전송(필요시 영상정보 포함 가능)
- ④ 환자는 진료 의뢰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요청
- ⑤ 의사는 전송된 진료의뢰서와 진료기록을 참고하여 전원환자 진료

□ 진료 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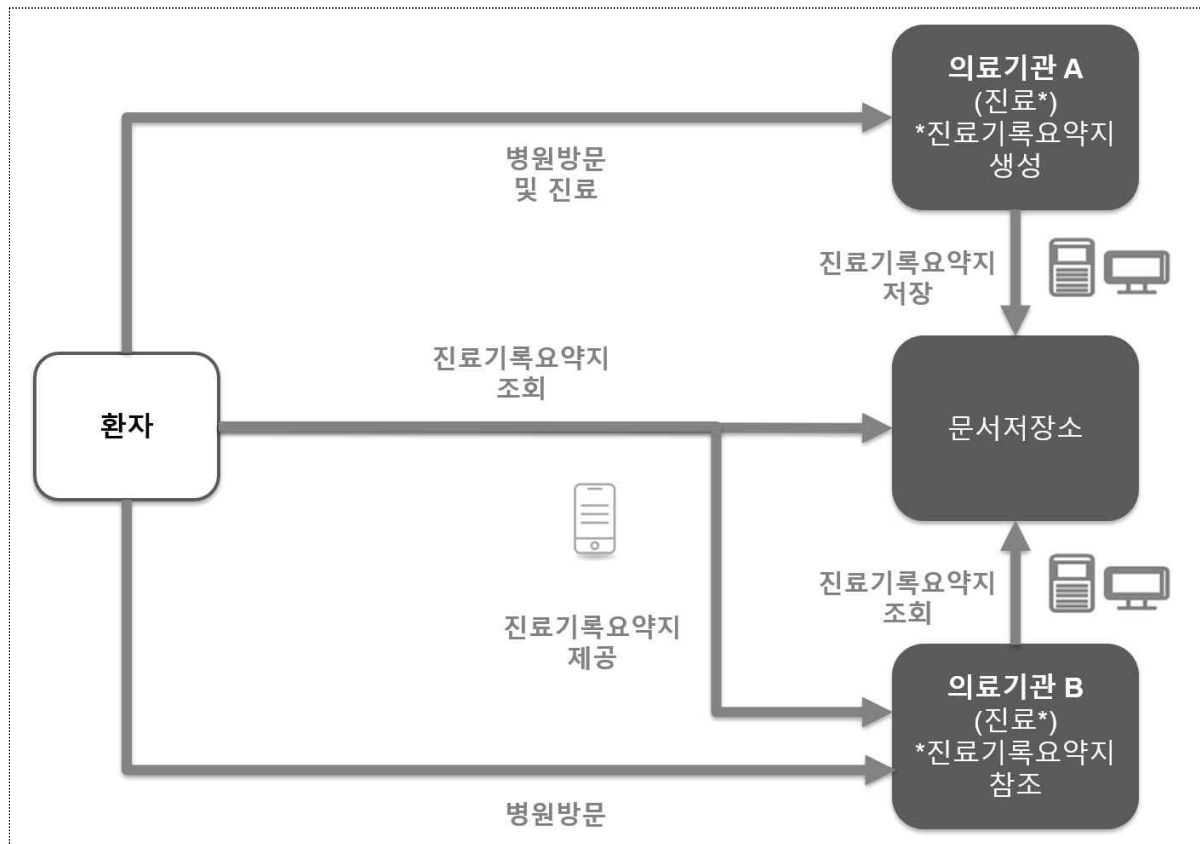
- (정의) 급성기 또는 중증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해당 환자를 전원하는 행위
- 업무절차



- ① 급성기 또는 중증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의사가 판단했을 때 입원 등을 위한 적절한 다른 의료기관에 해당 환자 전원 결정
- ② 표준연계모듈이 설치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을 이용하여 진료기록이 포함된 환자의 진료회송서 작성 및 전송(필요시 영상정보 포함가능)
- ③ 의사는 전송된 진료회송서와 진료기록을 참고하여 전원환자 진료

□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 (정의) 외래환자 진료 종료 시 또는 입원환자 퇴원 시 환자의 진료기록, 알리지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한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및 관리
- 서비스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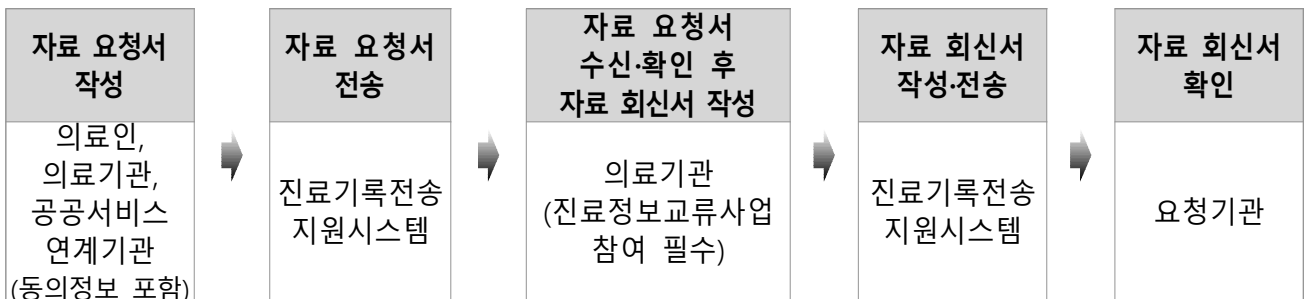
- ① 환자는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진료 요청
- ② 외래환자 진료 완료 또는 입원환자 퇴원 시 의료인은 진료기록요약지 생성
※ 진료기록요약지는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점부터 생성
- ③ 이후 환자가 다른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기존에 작성된 진료기록요약지 조회하여 진료에 활용
- ④ 작성된 진료기록요약지는 나의건강기록앱*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에게 제공하여 진료에 활용 가능

*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의 의료정보(진료정보, 예방접종 등)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앱

< 자료 요청·회신 >

□ 공통사항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송·수신하고자 하는 공공서비스 연계기관은 진료기록 조회 대상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반드시 동의를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서비스 연계기관의 동의는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로 갈음할 수 없음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개정, '26.2월 시행 예정)
- 업무절차



※ '26.2월 이전 연계된 공공서비스는 각 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이전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청·확인할 수 있음(시스템 적용 유예기간: ~2026. 12월)

□ 공공서비스 연계기관 현황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목적) 산재보험 대상자의 산재 신청·판정
- (연계시기) 2021. 4. ~
- (서비스 내용) 진료정보(진단명, 처방·검사내역 등), 영상정보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정보
- (수수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 '22.12.30.)에 근거하여 수가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수가 산정
영상정보제공 수수료는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공단이 요청한 영상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 여부를 토털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산정. 이 경우, 같은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방사선 등 영상진단 복사수수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주의사항) 자료요청 시 요청서에 내 산재 관련 신청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병무청 병역판정용 의료정보공유시스템

- (목적) 병역 대상자의 병역판정을 위한 진료·영상정보 등 확인
- (연계시기) 2022. 12. ~
- (서비스 내용) 진료정보(진단명, 처방·검사내역 등), 영상정보 등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정보
- (수수료) 위탁검사의 경우 검사결과 회신 후 의료기관에 진료비 등 지급·정산

(3) 국가보훈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 (목적) 국가유공 신청자의 상이판정을 위한 진료·영상정보 확인
- (연계시기) 2023. 12. ~
- (서비스 내용) 진료정보(진단정보, 처방·검사내역 등), 영상정보 등 보훈부에서 요구하는 정보

(4)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온라인포털시스템

- (목적) 장애 심사 대상자의 장애 심사 및 판정을 위한 진료·영상정보 등 확인
- (연계시기) 2025. 10.
- (서비스 내용) 진료정보(진단정보, 처방·검사내역 등), 영상정보 등 연금공단에서 요구하는 정보
- (수수료)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병원으로부터 확보한 진료기록지, 영상자료 등 발급비용에 대해 평균 3일이내에 수수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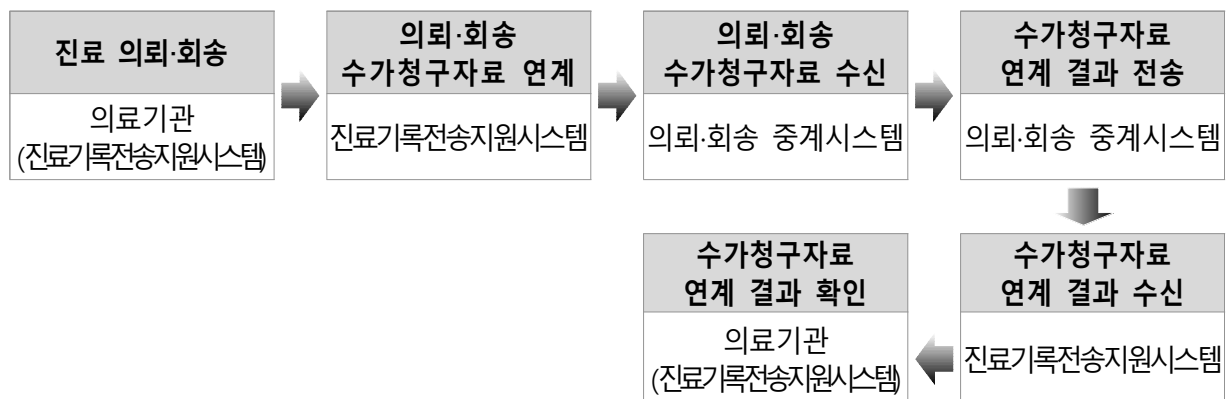
7 성과 지원

□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

- (개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의뢰·회송건 중 수가 청구 대상 자료에 대해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연계하여 수가 지원
- (지원내용)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24.12.)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해 진료의뢰·회송 시 시범사업 수가 산정
 - ※ 단, 심사평가원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한함
- 시범사업 수가 산정 대상
 - 대상기관 및 자격은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준함
- (제공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의뢰·회송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판독소견서, 영상정보 등 심사평가원에서 수가 심사 시 필요한 정보
- 수가 지급기준(자세한 내용은 「협력기관 간 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참고)

의뢰료	기준	수가
진료의뢰료 I	요양급여의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시 산정	11,000~15,000원
진료의뢰료 II	‘진료의뢰료 I’ 산정시 표준화된 진료정보 1종 이상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시 추가 산정	18,000~19,000원
진료의뢰료 III	‘진료의뢰료 I’ 산정시 영상정보와 영상검사결과지(또는 영상의학판독소견서) 포함 표준화된 진료정보 2종 이상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시 추가 산정	20,000~21,500원

● 업무절차



□ 전문 의뢰·회송 수가(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 (개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의뢰·회송건 중 전문 의뢰·회송에 해당하는 경우, 수가청구 대상 자료를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연계함
- (지원내용)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25.8.)에 따라 진료기록전송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문 의뢰·회송 시 전문 의뢰·회송 수가 산정

※ 단, 심사평가원 전문 의뢰·회송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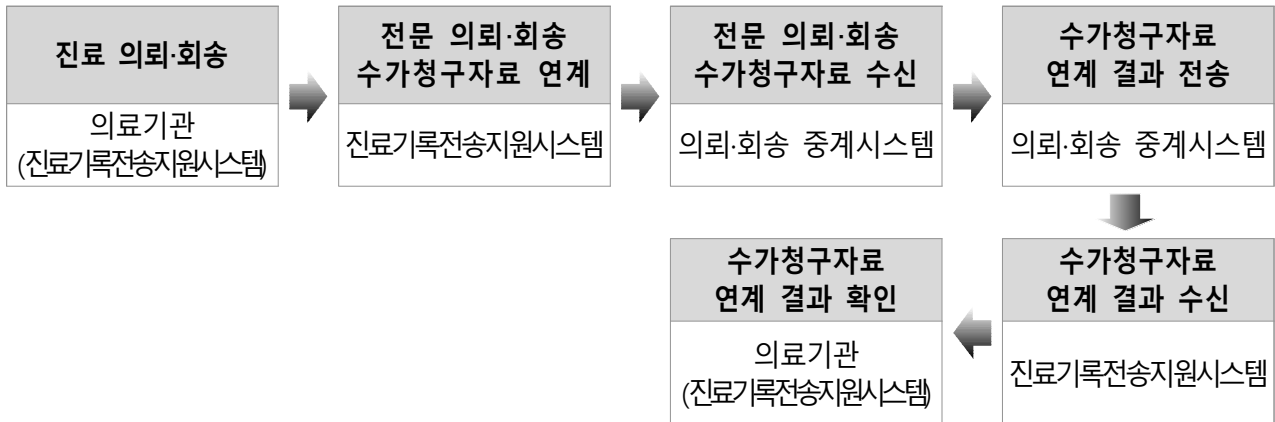
전문 의뢰·회송 수가 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보험급여과)에서 실시하는 전문 의뢰·회송 시, 요양급여 의뢰·회송서 등 해당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 지침에서 정하는 수가를 산정

- 전문 의뢰·회송 수가 산정 대상
 - 대상기관 및 자격, 수가 지급기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에 준함
- (제공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의뢰·회송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판독소견서, 영상정보, 피드백 및 만족도 등 심사평가원에서 수가 심사 시 필요한 정보
- 수가 지급기준(자세한 내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참고)

구분	1) 진료협력병원 전문 회송료	2) 상급종합병원 전문 회송료	3) 진료협력병원 전문 의뢰료	4) 진료협력병원 등 회송환자 관리료
수가	25,000~36,000원	49,000~66,000원	15,000~20,000원	15,000원
대상 기관	지원기관 → 2차급 진료협력병원	지원기관 → 상급종합병원	2차급 진료협력병원 → 지원기관	지원기관 → 2차급 진료협력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지역 구분	권역 내 또는 인접지역	수도권→비수도권	권역 내 또는 인접지역	<2차급 회송> 권역 내 또는 인접지역, <상급종합병원 회송> 수도권→비수도권
대상 환자	외래 또는 입원	외래 또는 입원	외래	외래 또는 입원
요건	▲패스트트랙 운영, ▲의사의 상세한 소견, ▲진료·영상정보 전자적 방식 제공 * 4) 진료협력병원 등 회송환자 관리료는 회송환자를 회송일로부터 90일 이내 진료한 경우			
지역가산	-	-	동일 권역 내	-

● 업무절차



□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 (개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전자교류문서 발생 통계를 산출하여 심사평가원에 제공
- (제공정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전자교류문서 건수, 참여 의료기관 간 전자교류문서 발생건수
- 성과 평가지표(자세한 내용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참고)
 - (평가지표) 협력체계 운영 계획 이행수준 - 협력체계 운영(6점)

구분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배점
협력체계 운영 (6점)	2. 환자안전·감염 예방 교육 및 의료질 향상 계획 이행수준	2-① 소아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수립한 교육 계획(수혈, 채혈, 감염 예방 등)이 적절히 수행되었는가?	2
	3. 직통연락망 및 진료정보공유 운영계획 이행수준	3-① 직통연락망 구축 및 의뢰·회송 계획(회복 후 이송, 연락망 구축, 배후기관 이송 등)이 이행되었는가?	2
		3-② 진료정보공유 플랫폼 (진료정보교류시스템 등) 활용이 계획에 따라 이행되었는가?	2

● 업무절차



8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안내

□ 개요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철회) 신청과 참여 의료기관 목록 조회 및 사업 참여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포털

□ 이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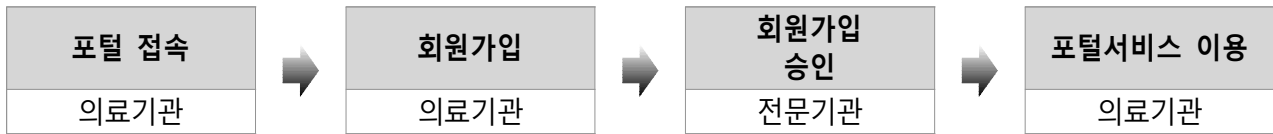
- 일반 국민
- 의료인, 의료기관, 공공서비스 연계기관
- EMR 업체

□ 주요 서비스

- (공통) 진료정보교류 사업 안내 및 참여 의료기관 안내
 -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취지, 목적과 서비스 유형 및 절차 안내 등
 -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 및 검색 제공 등
 - 사업 운영의 품질 향상을 위한 참여 공간 (질문하기(Q&A), FAQ 등)
- (국민) 개인정보 제공 동의(철회) 신청, 나의 진료정보교류 현황 조회
 -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등록(철회 포함)
 - 의뢰, 회송 등 의료기관 간 본인의 진료정보 교류 현황 확인
-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진료정보교류 현황 조회
 -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변경·철회) 신청서 작성 및 현황 확인
 - 거점 의료기관, 협력 의료기관 간 협약서 작성 및 제출
 - 의료기관에서 송·수신한 전자교류문서 현황 통계 조회
- (의료기관, EMR 업체) 진료정보교류 정합성 검사(자가점검) 지원
 -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CDA 정합성 검사(자가점검) 지원

□ 이용방법

- (국민)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접속 → 본인인증
- (의료기관)



- (포털 접속)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접속
- (회원가입) 의료기관 회원가입 화면에서 휴대폰 인증 후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및 해당하는 권한(거점의료기관 관리자, 협력 병·의원 사용자 등) 선택
 - ※ 거점 의료기관 관리자는 거점 의료기관에 한 명만 가능
- (승인 완료) 전문기관에서 회원가입 자동 승인
 - ※ 단, 거점의료기관 관리자 권한은 전문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수동 승인

제2장 사용자별 이용절차

1 국민

□ 이용대상

-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
 - 의료법 제21조의2에 의거, 의식이 없는 환자 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 등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환자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 가능
 - *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비속·존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 배우자의 직계존속(의료법 제21조3항에 따름)

□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 (서식3)

(1) 의료기관 방문 신청

-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안내(서면, 온라인, 모바일 서명 방식 중 택 1)



- ① (의료기관) 환자 진료 접수 시 진료정보교류 참여 신청안내 및 의사 확인
 -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동의서를 서면, 온라인, 모바일 중 1가지 방법으로 작성 안내
 - ※ 모바일은 문자 메시지 수신 동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본인인증 후 동의서 작성 가능
- ② (국민) 본인인증 및 동의서 작성
 -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 후 서면 또는 모바일 서명을 통해 동의서 작성
- ③ (의료기관) 작성된 동의서 확인·접수 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에 등록
 - ※ 모바일 이용 시 시스템 자동 등록
 - 서면으로 신청받은 경우, 의료기관은 동의서 원본 보관 또는 분기별로 전문기관에 우편 발송
- ④ (국민/의료기관) 개인정보 동의 시 환자에게 안내 문자 자동발송

(2) 온라인 신청 (참고4)

-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이용신청



- ① (포털 접속) 온라인에서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에 접속
- ② (본인인증) 본인인증 화면에서 '휴대전화 인증' 후 동의서 작성 화면 이동
- ③ (동의서 작성 및 확인) 동의서 확인 후 '동의하기' 선택
- ④ (신청 완료) 신청 완료 시 등록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 수신

□ 서비스 철회 신청 (서식4)

- (개요) 참여 중인 국민이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특정 의료기관 또는 진료과의 진료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체 또는 부분 철회 가능
- 철회 종류
 - (전체 철회)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 전체를 철회하는 것으로, 철회 시점부터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문서 생성 및 교류 중단
 - 부분 철회
 - (의료기관) 특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를 원하지 않을 경우
 - ※ 부분 철회된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문서 생성·조회 불가
 - (진료과) 특정 진료과를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를 원하지 않을 경우
 - ※ 부분 철회된 진료과는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문서를 생성하지 않지만 타 진료과의 진료정보는 조회 가능
-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와 동일

2 의료기관

□ 신청 자격 및 참여 요건

● 신청 자격

- (거점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이상의 공공의료기관 등
- (협력 의료기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진료기록 송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 (참여 요건) 거점 의료기관은 협력 의료기관 50개소 이상 동반 참여

※ 협력 의료기관은 별도 신청 자격 및 참여 요건 없음

□ 신청기간

● (거점 의료기관) 전문기관과 사전협의 후 상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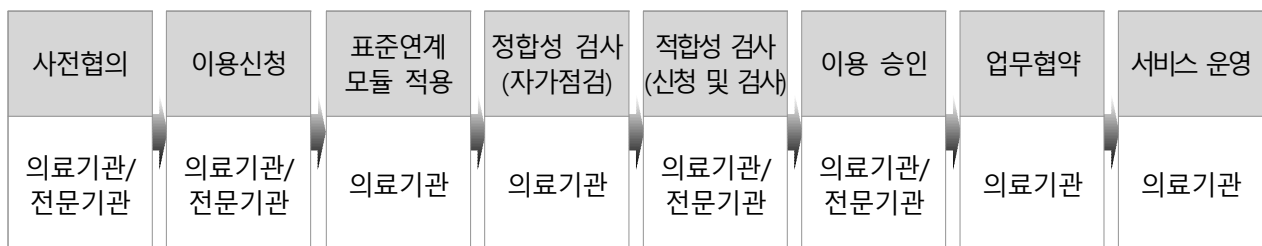
※ 단, 사업예산 등 전문기관의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공모 및 지정에 의한 참여는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일정은 보건복지부·전문기관 홈페이지 확인 요망

※ 보건복지부(전문기관)는 기존 거점 의료기관의 분포 및 참여 의료기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점 의료기관 선정 여부 결정

● (협력 의료기관) 연계하고자 하는 거점 의료기관과 사전협의 후 상시 신청

※ 해당 지역에 거점 의료기관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전문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사업 참여절차



①~② 사전협의 및 이용신청

- 신청 방법

- (거점 의료기관)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제출
- (협력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에 접속하여 신청

- 작성양식(제출서류)

- 사전협의 요청서(거점 의료기관은 TF 구성·운영 계획(안) 등 포함) ... [서식5]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 신청서 ... [서식1]
- 교류객체등록번호 신청서 ... [서식2]

- (문의처) 전문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 상담센터(1666-7598) 또는 (협력 의료기관의 경우) 연계 거점의료기관 진료협력센터(참고 1)

- 사전 협의사항

- 거점 의료기관

구분	내용
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 전산 구축 환경에 관한 사항 ○ 표준연계모듈 적용에 관한 사항 ○ 중계서버 구축 및 준비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표준용어 적용에 관한 사항
업무 절차 및 운영	○ 협력 의료기관 모집 및 협력·관리에 관한 사항 ○ TFT(Task Force Team)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실무협의체 참여에 관한 사항
활성화	○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및 홍보 방안

- 협력 의료기관

구분	내용
사업 참여	○ 거점 의료기관 선택에 관한 사항
시스템 구축	○ 의료기관 전산 구축 환경에 관한 사항 ○ 표준연계모듈 적용에 관한 사항
업무 절차 및 운영	○ 휴·폐업 시 전문기관 및 거점 의료기관 통보에 관한 사항
활성화	○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및 홍보 방안

③~⑤ 표준연계모듈 적용 및 정합성(자가점검) · 적합성 검사

- (표준연계모듈 적용) 의료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에 따라 표준 및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진료기록전송지원 시스템 구축

< 진료정보 연계모듈 적용을 위한 시스템 사양 >

항목	최소 사양	권장 사양
CPU	4코어 (Modern Xeon E-series / Core i5 급)	6코어 이상 (Modern Xeon E-series / Core i5 급)
메모리(RAM)	16 GB	32 GB 이상
디스크(OS)	256 GB NVMe SSD	512 GB NVMe SSD 이상
OS	Windows Server 2019+ 또는 Windows 11	Windows Server 2022+ 또는 Windows 11 이상
보안 프로토콜	TLS 1.2	TLS 1.2 이상

- (영상연계모듈 적용) 영상정보교류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비 및 PACS와의 DICOM 연계방식(DICOM Q/R 또는 SEND 방식)에 따른 영상연계모듈 적용

< 영상연계모듈 적용을 위한 시스템 사양 >

항목	최소 사양	권장 사양
CPU	4코어 (Modern Xeon E-series / Core i5 급)	8코어 이상 (Modern Xeon E-series / Core i7 급)
메모리(RAM)	32 GB	64 GB 이상
디스크(OS)	512 GB NVMe SSD	512 GB NVMe SSD
OS	Windows Server 2019+ 또는 Windows 11	Windows Server 2022+ 또는 Windows 11 이상
보안 프로토콜	TLS 1.2	TLS 1.2 이상

- (정합성 검증 · 적합성 검사) 표준연계모듈 적용에 대한 교류서식(CDA) 정합성 및 시스템 구현 정도에 대해 정합성 검증(자가점검) 및 적합성 검사

※ 단, 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상용 EMR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정합성(자가점검)·적합성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⑥ 이용 승인

- 전문기관은 의료기관의 표준연계모듈 적용 정합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 적합 여부를 심사 후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⑦ 업무협약

- 이용 서식 : 표준협약서 ... [서식6]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의료기관 간 표준협약서
-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의료기관 간의 업무협약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에서 전자적으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 서비스 운영

- 이용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이용·운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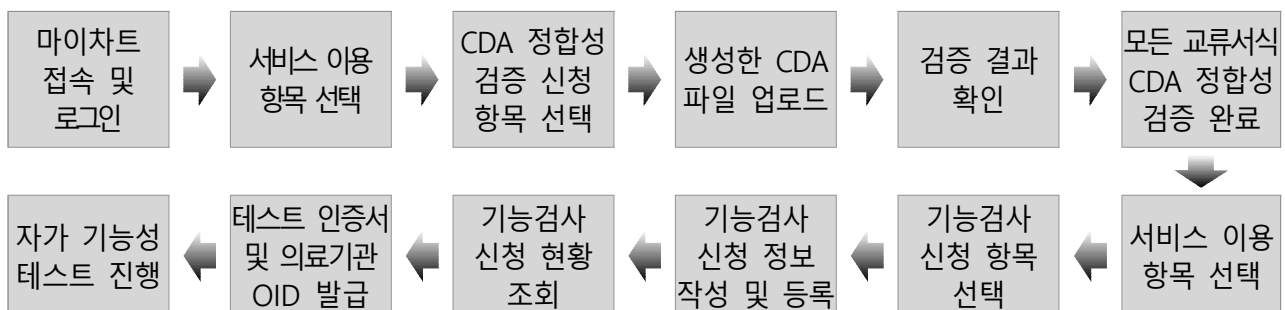
□ 표준연계모듈 적용

-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가 확정된 거점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표준연계모듈 적용
 - ※ 표준연계 개발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참고
- 사업 참여가 확정된 의료기관은 시스템 구축 시 전문기관에 기술자문 및 관련 가이드라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진료정보교류 표준 준수, 정합성·적합성·기능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 구축 사항(세부내용은 개발 가이드라인 참고)
 -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연계모듈 적용
 - 표준연계모듈을 분리형으로 구축해야 할 경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계 서버는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권장 사항 준수

□ 정합성 검사(자가점검)

- (개념) 교류서식(CDA)의 데이터 설정 오류, 필수값 누락 등 표준연계모듈 적용을 위한 주요 기능 자가점검 지원

< 정합성 검사(자가점검) 절차 >



● 검사 항목

검사 항목	내용
교류서식(CDA) 적합성 검증	거점 의료기관에서 생성한 CDA 문서 확인 * 진료의뢰서, 진료회송서, 진료회신서, 진료기록요약지, 개인정보 동의서
기능검사	표준연계모듈 적용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서버와 교류서식을 송·수신할 수 있는 테스트용 인증서 및 OID를 발급받아 자가 기능성 테스트 진행

- (검사 방법)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에 접속하여 검사 실시
※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의 해당 서비스 내의 설명 참조
- (검사 후 조치) 자가점검 후 전문기관에 적합성 검사 신청
※ 자가점검 시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고객센터센터로 문의
- (생략) 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상용 EMR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적합성 (자가점검)를 생략할 수 있음

□ 적합성 검사(현장점검)

- (개념) 전문기관에서 재검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가점검 결과 적합 여부 검사
- (신청방법) 상시로 적합성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으로 신청
- 검사항목

검사 항목	내용
교류서식(CDA) 및 기능개발에 대한 적합성 검사	의료기관의 자가점검 후 작성하여 제출한 적합성 검사 신청서의 검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표준연계모듈 적용 개발에 따른 화면 및 기능구현 적합 여부 검사

- (검사 방법) 의료기관이 제출한 적합성 검사 신청서를 토대로 검사기준 적합 여부 사전심사 후 현장실사 또는 원격 점검
 - 전문기관은 적합 여부 검토 및 점검 실시(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테스트 지원 요청)
 - 전문기관은 미흡 사항 발생 시 의료기관에 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조치를 하여야 함
- (생략) 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상용 EMR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적합성 (자가점검)를 생략할 수 있음

□ 해지 및 탈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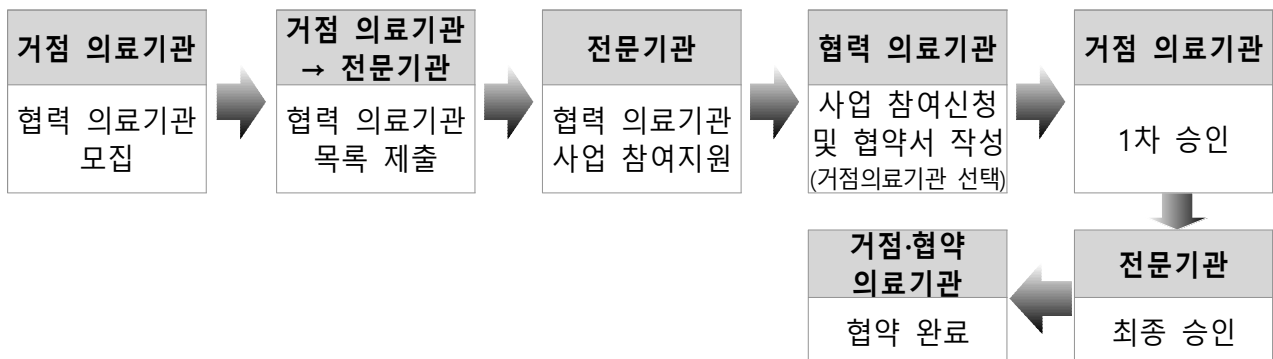
- (해지)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를 철회(취소)하여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 해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전문기관에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여 시스템 해지 처리를 하여야 함
 -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해지 신청서(서식1), 교류객체등록번호 폐기 신청서(서식2)
 - 단, 협력 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공문은 생략할 수 있음*
 - * (진료정보교류 누리집 경로) 로그인 → 서비스이용 → 이용신청서현황 → 해지
 - 해지절차(협력 의료기관만 해당 >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 (탈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이 휴·폐업하거나(자동탈퇴)*, 대표자 변경 등에 의해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기존 탈퇴 후 신규 가입 필요)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연계·확인하여 자동탈퇴 처리
 -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기존 의료기관의 OID(교류객체등록번호) 탈퇴 후 신규 참여 의료기관 참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공문 제출하여야 함
 -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 신청서(서식1), 교류객체등록번호 등록 신청서(서식2)

□ 업무협약

- 업무협약 절차



-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의료기관 간 표준협약서 제출 및 관리

-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의료기관 간의 업무협약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에서 전자적으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 역할

(1) 거점 의료기관

- 진료정보교류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 진료정보교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전문기관과 거점 의료기관 간 소통강화 및 협조 체계 구축
- 전담 조직 구성(안)

구분	주요업무
진료정보교류 TFT 단장	- 거점 의료기관(예: 00대학교병원) 진료정보교류사업 총괄
총괄팀장	- 진료정보교류사업 실무 총괄
간사	-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을 통한 정책·운영에 대한 안건 제안 - 전문기관·거점의료기관·협력의료기관 간 소통 지원
진료협력센터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진료 의뢰·회송 업무 및 진료기록요약지 생성·관리 - 협력 의료기관 모집·관리, 희망기관 사전 준비 지원 - 진료정보교류 홍보 및 활성화 지원 - 사업의 원활한 행정적 처리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 등
의료정보팀	- 진료정보교류 응용S/W(서비스) 운영 및 관리 - 장애처리 및 작업 지원 - 진료정보교류 관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부서이동, 업무분장 변경 등을 고려하여 매년 현행화 실시

- 진료정보교류 사업 활성화 및 회의 참여

- 진료정보교류 사업 협력 의료기관 홍보 및 교육 등 사용 독려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 도출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보고
- 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 성과지표 관리 및 성과 보고
- 협의체 참석 등을 통한 정책·운영에 대한 안건 제안
- 거점 의료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협의체 등 회의에 적극 참석

* 협의체 등 회의에 불참한 기관은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전문기관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

-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의료기관 간 고객 지원을 위한 소통 채널 개설
-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환자의 요구사항 수렴

● 운영점검

-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표준(상호운용성) 준수 및 관리
-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 협력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현황을 파악 후 개선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 전문기관의 적합성 승인 후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운영
- 오류 및 유지보수 발생 시 상용 솔루션 EMR 사용 의료기관의 경우 EMR 업체에 연락, 자체개발 EMR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진행
- 장애 발생 시 전문기관에 즉시 통보 후 조치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변경사항* 발생 시 전문기관에 변경신청서(서식1) 제출(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에서 제출 가능)

* 거점 의료기관 정보, 연계방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정보 변경 등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정보보호

- 진료기록을 전송 시, 수신기관, 진료정보 등을 오입력·오전송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여야 하며, 오전송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전송을 취소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오전송 방지대책 및 대응방안을 내부적으로 수립·관리하여야 함

< (예시) 오전송 방지대책 및 대응방안 >

- ① 수신기관 조회/선택 시, 주소 등 수신기관 정보 확인
- ② 일정기간(당일 등) 내 동일 환자에 대해 복수 기관으로 전자교류문서를 전송 시 이미 전송한 전자교류 문서가 있음을 안내하는 등 오전송 예방을 위한 EMR의 알림 제공
- ③ 일정기간(당일 등) 내 동일 환자에 대해 복수 기관으로 전송된 전자교류문서를 조회하는 기능 개발 등 모니터링 및 오전송 여부를 판단하여 자료전송 취소 처리
- ④ 오전송 시 즉시 자료전송 취소

- 진료정보교류 기능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성 검토 수행
- 안전한 진료정보교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2) 협력 의료기관

● 진료정보교류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 전문기관의 적합성 승인 후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운영
- 오류 및 유지보수 발생 시 상용 솔루션 EMR 사용 의료기관의 경우 EMR 업체에 연락, 자체개발 EMR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진행
- 장애 발생 시 거점 의료기관과 전문기관에 즉시 통보 후 조치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의 변경사항* 발생 시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에 변경 신청서(서식1) 제출

* 협력의료기관 정보, 연계방식,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정보 변경 등

●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적극 참여

-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사용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요구 도출
- 진료정보교류 참여 환자의 요구사항 수렴

● 진료정보교류 정보보호

- 진료정보교류 기능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성 검토 수행
- 안전한 진료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3 EMR 업체

□ 대상

-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을 제조·공급하는 업체

□ 신청 기간

- 전문기관과 사전협의 후 상시 신청

□ 사업 참여절차



① 사전협의

- (신청방법) 전문기관으로 절차 등 문의
- 준비 사항
 -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사항 등
 - 개발환경(개발언어, 버전 등) 및 개발 기간 등
 -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기능개선에 따른 업데이트 가능 여부 등
 - 보건의료 표준용어 적용에 관한 사항
 - 진료정보교류 소스(패키지) 사용에 따른 보안 및 준수 사항
 -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EMR의 배포·교육·상담 등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②~④ 표준연계모듈 적용 및 정합성(자가점검)·적합성 검사

- (표준연계모듈 적용) 사업 참여가 확정된 EMR 업체는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5,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에 따라 표준 및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표준연계모듈을 해당 EMR 업체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에 적용
- (정합성 검증·적합성 검사) 표준연계모듈 적용에 대한 교류서식(CDA) 정합성 및 시스템 구현 정도에 대한 정합성 검증(자가점검) 및 적합성 검사

⑤ 이용 승인

- 전문기관은 적합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
- 이용 승인은 표준연계모듈을 적용한 EMR 제품의 해당 버전에만 유효하며, 해당 EMR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의료기관 사업 참여 신청 시 정합성 검증 및 적합성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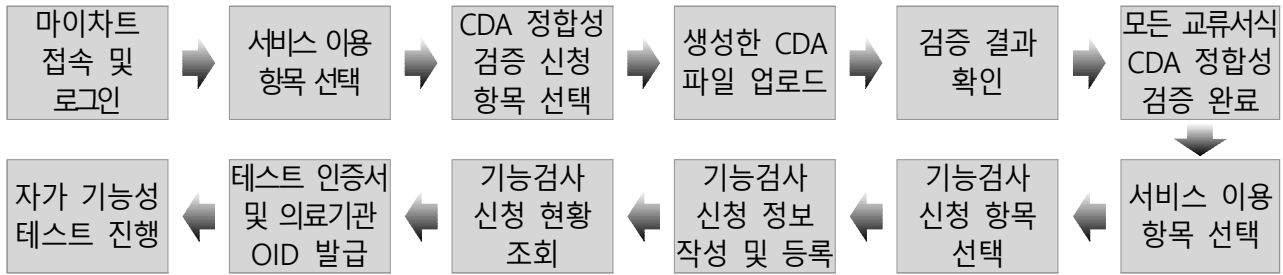
□ 표준연계모듈 적용

-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가 확정된 EMR 업체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에 표준연계모듈 적용
 - ※ 표준연계 개발 가이드라인은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공지사항 참고
- 사업 참여가 확정된 EMR 업체는 시스템 구축 시 전문기관에 기술자문 및 관련 가이드라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진료정보교류 표준 준수, 정합성·적합성·기능성·보안성 등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 구축 사항(세부내용은 개발 가이드라인 참고)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에 표준연계모듈 적용
 -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의 표준용어 준수
 - 전자교류문서 전송 시, 사용자가 수신기관, 진료정보 등을 오입력·오전송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에 포함
 - * 오입력·오전송 예방을 위한 기능(안)
 - ① 사용자가 수신기관 선택 시, 선택한 수신기관 정보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제공⁴
 - ② 일정기간(당일 등) 내 동일 환자에 대해 복수 기관으로 전자교류문서를 전송 시 이미 전송한 전자교류문서가 있음을 안내하는 등 오전송 예방을 위한 알림 제공
 - ③ 일정기간(당일 등) 내 동일 환자에 대해 복수 기관으로 전송된 전자교류문서를 조회하는 기능개발 등 모니터링
 - ④ 오전송 시 즉시 자료전송 취소

□ 정합성 검사(자가점검)

- (개념) 교류서식(CDA)의 데이터 설정 오류, 필수값 누락 등 표준연계모듈 적용을 위한 주요 기능 자가점검 지원

< 적합성 검사(자가점검) 절차 >



● 검사 항목

검사 항목	내용
교류서식(CDA) 적합성 검증	EMR 업체에서 생성한 CDA문서 확인 * 진료의뢰서, 진료회송서, 진료회신서, 진료기록요약지, 동의서
기능검사	표준연계모듈 적용 개발을 위해 시뮬레이션 서버와 교류서식을 송·수신할 수 있는 테스트용 인증서 및 OID를 발급받아 자가 기능성 테스트 진행

- (검사 방법) EMR 업체는 표준연계모듈 적용 시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
 - ※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의 해당 서비스 내의 설명 참조
- (검사 후 조치) 해당 의료기관은 자가점검 후 적합성 검사 신청
 - ※ 자가점검 시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고객센터센터로 문의

□ 적합성 검증

- (개념) 전문기관에서 재검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가점검 결과 적합 여부 검사
- (신청방법) 상시로 적합성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으로 신청
 - ※ (경로)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 참여마당 > 기타 > 자료실
- 검사항목

검사 항목	내용
교류서식(CDA) 및 기능개발에 대한 적합성 검사	EMR 업체의 자가점검 후 작성하여 제출한 적합성 검사 신청서의 검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표준연계모듈 적용 개발에 따른 화면 및 기능구현 적합 여부 검사

- (검사 방법) EMR 업체가 제출한 적합성 검사 신청서를 토대로 검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사전심사 후 현장실사 또는 원격 점검

- 전문기관은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점검 실시
- 전문기관은 미흡 사항 발생 시 의료기관에 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EMR 업체는 조치를 하여야 함

□ EMR 업체 역할

● 표준연계모듈 적용

-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한 EMR 업체는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5,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에 따라 표준 및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표준 연계모듈을 해당 EMR 업체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에 충실히 적용

● 표준연계모듈 유지보수

-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한 EMR 업체는 표준연계모듈의 기능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업데이트 배포 및 의료기관 업데이트 지원
- 기능개선 반영은 전문기관에서 통보 후 즉시 시행, 일정은 전문기관과 논의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문제로 인한 진료정보교류 기능의 오류 발생 시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진행사항 및 조치결과는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서식1)를 전문기관에 제출(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에서 제출 가능)

* 신청 EMR 업체 정보, 개발환경,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정보 변경 등

● 진료정보교류 사업 활성화 적극 참여

-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대한 홍보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요구 도출
- 협의체 등 관련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정보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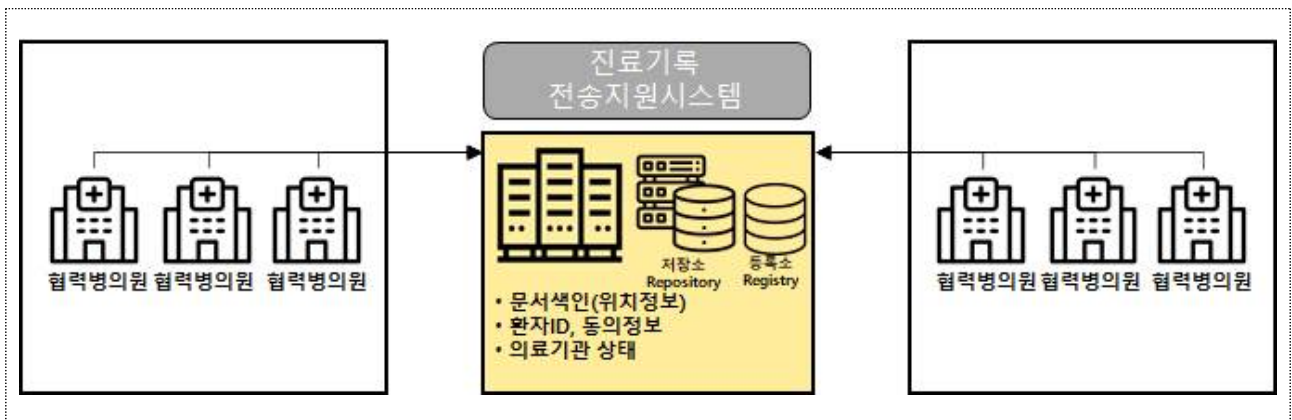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기능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성 검토 수행
-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 후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보호 방안 마련

제3장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1 기술적 보호 · 보안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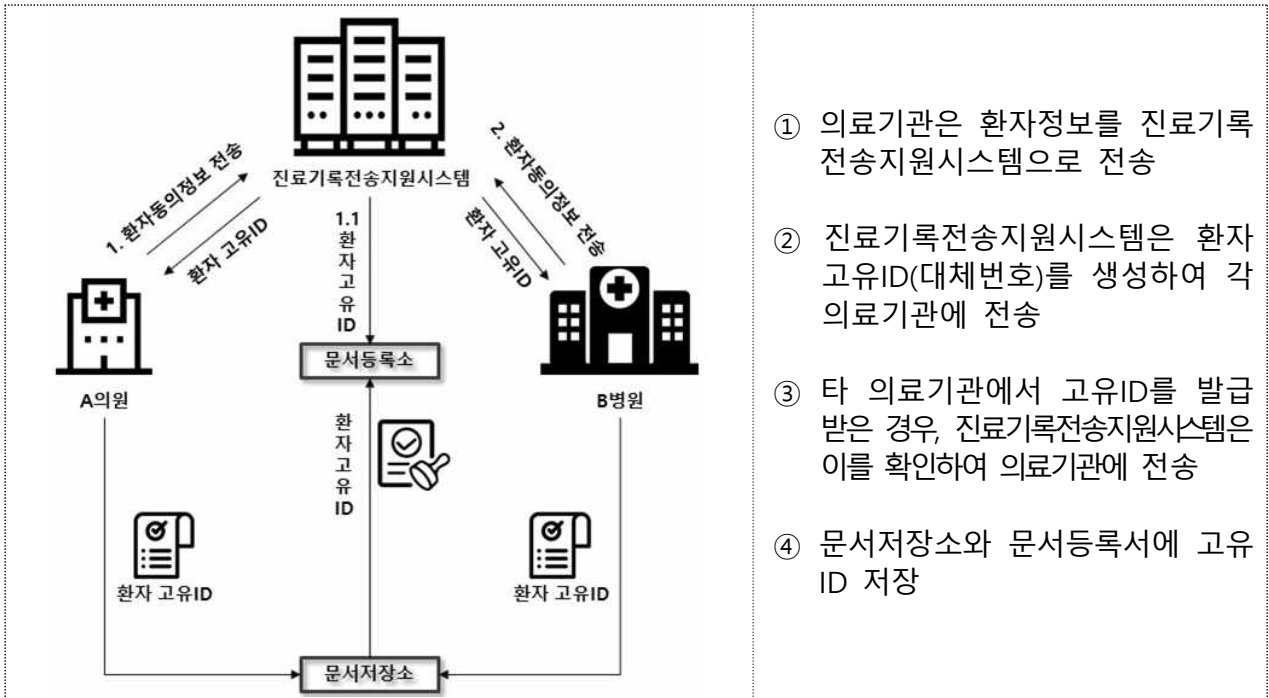
□ 정보 분산

- 개인 진료기록은 개별 의료기관에 저장되며, 진료기록 요약정보는 문서저장소에 저장
 - 개별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진료기록에서 표준화된 진료기록요약지(CRS) 등 교류문서 추출·전송
 - 전자교류문서는 문서저장소에 저장되고, 문서저장 위치 등 색인정보는 문서등록소에 저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H/W, S/W 등 위치



□ 고유식별정보 제거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는 대체 번호(고유ID)를 부여하고, 추출·전송·조회되는 진료기록요약지 등에서는 대체 번호만 사용
 - 주민등록번호는 환자 고유식별정보로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환자식별체계(MPI) 시스템을 통해 대체 번호(고유ID)를 부여·운영
 -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대체번호(고유ID)를 사용하여 교류되는 진료기록문서만으로는 누구의 정보인지 불분명하게 처리
- 문서저장소와 문서등록소에는 대체번호만 저장·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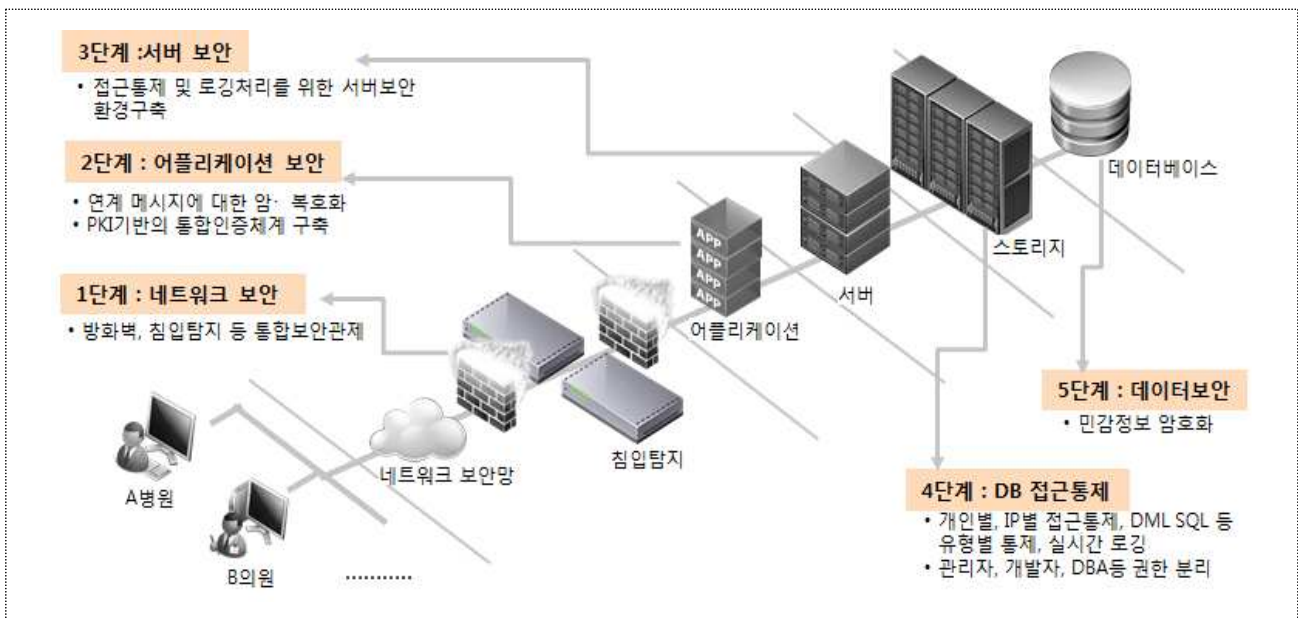
□ 부적절한 접근 통제

-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교류문서 검색·조회는 동의한 환자에 한하여 가능함
 - 자료의 추출·전송 전 실시간으로 환자 동의 여부 확인 후 처리
 - ※ 접근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는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로그로 관리됨

□ 기술적 보안 조치(5단계 시스템 보안) (근거: 의료법 제21조의2제5항1호)

- 네트워크·서버·데이터 보안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기술적인 보안 조치
- (네트워크) 방화벽, 침입 탐지 등의 정보보호 제품은 CC인증 제품사용 또는 국정원 보안 적합성 인증을 완료
- (애플리케이션) OWASP(국제웹보안표준기구) Top 10 보안 취약점,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등 취약점에 대한 방지 조치 실시
 - 위 기준에 따라 접근이 허용된 기능에만 접근이 가능하고, 송·수신되는 자료는 모두 암호화하여 전송
- (서버) 서버에 대한 보안운영체제를 적용하여 내부자료 유출방지, 감사 및 추적 기능 등 서버 보안을 강화

- (접근통제) 개인 · IP · 유형별 접근을 통제하고, 모든 접근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이에 대한 위 · 변조 및 도난 · 분실되지 않게 보관
- (데이터베이스) 민감정보 등에 대해서는 암호화하고, 문서저장소와 문서등록소를 분리하여 관리
-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는 전산실 또는 자료실에는 CCTV나 감시카메라 등의 감시 장비 또는 전자출입증 등의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내역을 기록 · 관리



□ 사이버 관제 등 관리적 보안조치

- 문서저장소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제 실시
- 시스템별 · 사용자별 접근권한 및 시스템 관리에 대한 관리계획을 통해 운영 시 체계적인 보안 점검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접속 시 접속한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여 보관
 - 서버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 정보시스템 접근 기록과 전산 자료 열람·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사용일시, 자료제목 등의 전산자료 접근 기록을 보관
- 시스템에 접근한 자료(자동으로 기록된 접속 내용) 관리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및 문서저장소 접속은 권한을 부여받은 시스템 운영 및 보안 담당자에 한하여 접근 가능

- 접속 시도 시 자동으로 접근기록이 되며, 시스템 접근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정보 발생 및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보

□ 법 · 제도적 장치

- (정보보호조치 의무 부과 등) 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및 보유정보의 제3자 임의 제공 · 유출 금지
- (정보누출 등 금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각종 정보에 대한 누출 · 변조 · 훼손 금지
- (위반 시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관련근거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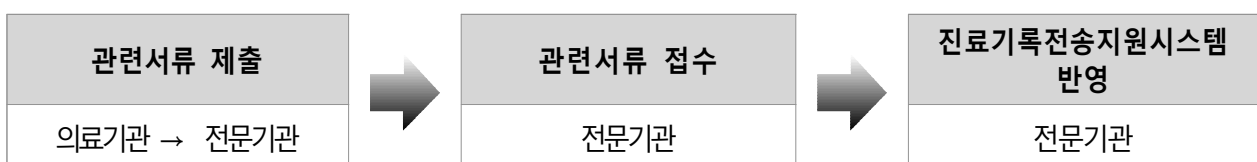
2 서비스 변경 신청

□ 개요

- (의료기관의 해지) 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이 참여를 철회(취소)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탈퇴) 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가 연계되거나, 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 행정절차

- 의료기관의 해지 시 해당 의료기관은 전문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전문기관은 제출 서류를 접수하고 진료기록전송지원 시스템 해지 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휴·폐업정보가 자동 연계되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반영 후 진료기록전송지원 시스템 탈퇴 처리
- 요양기관기호 변경에 따른 탈퇴의 경우, 기존 의료기관의 탈퇴 절차 진행 후 신규 의료기관의 참여 절차로 진행



● 해지 및 탈퇴 신청 방법

-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해지 신청서(서식1), 교류객체등록번호 폐기 신청서(서식2) 각 1부 제출

※ 표준협약서는 해당 거점 의료기관에 통보 후 파기

* (진료정보교류 누리집 경로) 메인 → 로그인 → 서비스이용 → 이용신청서현황 → 해지

● 탈퇴 신청 후 신규 참여 신청 방법

-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신청서(서식1), 교류객체등록번호 신청서(서식2) 각 1부 제출
- 마이차트를 통해 신청서 작성*

* (진료정보교류 누리집 경로) 메인 → 로그인 → 서비스이용 → 이용신청서현황 → 해지

3 사용자 권한 관리 체계

□ 개요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접근·권한은 규정에 따라 적합·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성·효율성 제고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도모

□ 권한관리 체계

- 권한관리 운영 체계는 전문기관↔거점 의료기관↔협력 의료기관으로 구성
- 권한관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지정된 권한자는 사용자 등록 또는 시스템 이용 신청에 대해 승인 및 사용자 권한 변경 처리를 수행
 - '전문기관'은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협력의료기관의 시스템 이용신청 관리를 위해 거점별 '거점운영책임자' 지정
 - '거점운영책임자'는 거점의료기관의 거점의료기관장이 원칙이나, 진료정보교류사업에 관련된 부서의 장에게 권한 위임 가능
 - '거점 운영책임자'는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협력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시스템 이용 신청에 대한 1차 승인 권한 부여

< 주체별 책임 및 업무 >

주체	담당자	수행 업무
진료기록전송 지원시스템 관리자 (전문기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사업단장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총괄 ○ 거점 운영책임자 권한 관리 ○ 거점 의료기관 사용자 및 협력 의료기관 사용자 권한 관리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신청 최종 승인
거점 의료기관 운영책임자	의료기관장 또는 (권한위임) 부서장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협력 의료기관 이용신청 1차 승인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사용자 신청 및 시스템 이용신청 ○ 담당자 권한에 따른 업무처리
협력 의료기관 업무담당자	협력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사용자 신청 및 시스템 이용신청 ○ 담당자 권한에 따른 업무처리

□ 권한관리 범위

● 전문기관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관리 총괄
- 거점 의료기관 및 협력 의료기관 사용자 권한 승인
- 참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 승인

● 거점 의료기관

- 협력 의료기관 연계 승인 및 목록 관리
- 의료기관 EMR 내 진료정보교류 기능 활용 업무 수행

● 협력 의료기관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사용자 권한 및 시스템 이용 신청
- 의료기관 EMR 내 진료정보교류 기능 활용 의뢰·회송 업무 수행

□ 사용자 권한 신청

-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권한 선택

회원가입 작성 시 유의 사항	
아이디	본인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디 사용 및 중복검사
비밀번호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혼합 9자리 이상
권한	거점의료기관관리자 / 거점의료기관사용자 / 협력 병·의원사용자
기타	담당자명, 연락처, 주소 등 정확히 기재

- '거점 의료기관사용자'는 권한을 거점 의료기관사용자*로 신청
- '협력 의료기관'은 권한을 협력 병·의원사용자*로 신청

* 거점 의료기관사용자 및 협력 병·의원사용자 권한은 신청 시 자동 승인

□ 사용자 권한 승인

- 전문기관은 거점 운영책임자 신청내용을 확인 후 승인
- 거점 의료기관사용자 및 협력 병·의원사용자는 권한 신청 후 자동 승인

※ 사용자 권한 취득 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 신청 가능

□ 사용자 권한 변경

- 전문기관은 거점 의료기관 및 협력 의료기관의 인사이동, 조직변경, 퇴직 등으로 업무담당자 또는 업무가 변경에 따른 권한 변경 신청 시 기존에 부여된 권한을 변경 또는 중지 처리
 -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의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 기 부여된 권한은 종료
 - 담당자의 권한을 종료처리 하기 전, 처리 진행 중인 업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업무종료 후, 권한 종료 처리 실시
- 전문기관은 시스템 장기 미접속 사용자에게 권한 정지 및 중지할 수 있음
 - (거점 운영책임자) 전문기관이 의료기관에 확인 후 권한 정지 및 중지 처리
 - (거점 의료기관사용자) 거점 운영책임자가 확인 후 전문기관에 권한 정지 및 중지 처리 요청

- (협력 의료기관사용자)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접속현황* 확인 후 일괄 권한 정지

* 권한 정지 대상: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접속로그 기준 6개월 간 미접속 사용자

□ 사용자 유의사항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서 사용하는 ID는 사용자에게 대해서 유일하게 존재하며, ID 변경 불가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접속과 조회내용은 자동으로 기록 관리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사용자는 본인의 계정에 대하여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사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소홀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권한 오남용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가능

* 관련근거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4 개인정보 파기

□ 기본원칙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관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

□ 관련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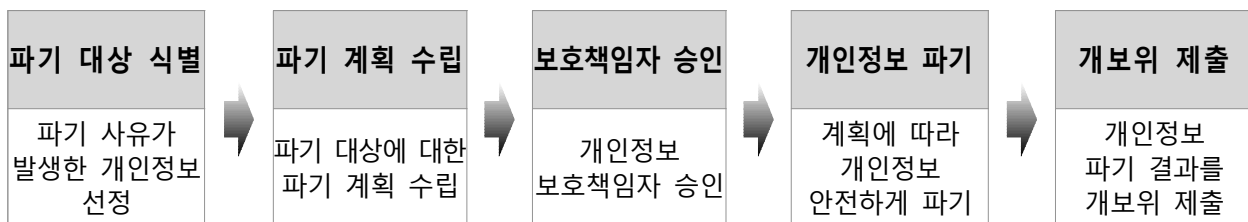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28조(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개인정보 파기 절차 준수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보유기간	파기 주기
진료정보교류 참여자 정보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대국민 정보	1년 또는 동의 철회 시 까지	보유기간 경과 시 상시 파기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의료진 정보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에 회원가입한 의료기관의 의료진 정보	탈퇴 시까지	
진료정보교류 전자 의무기록 정보	진료정보교류 서비스에 동의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정보	1년	
진료정보교류 영상 정보	진료정보교류 서비스에 동의한 환자에 대한 MRI 등 영상정보	1년	

□ 파기절차



□ 파기시기

-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 시*

*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

※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및 관리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
-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제4장 상담센터 운영 및 민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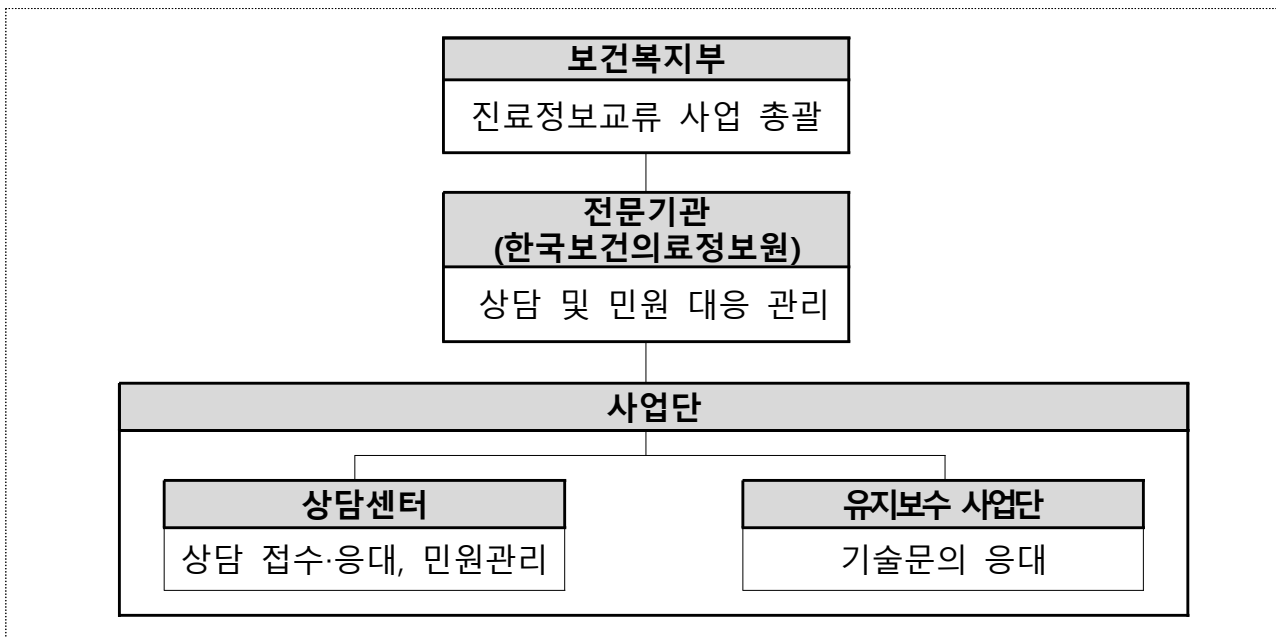
1 개요

□ 운영목적

-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수행하며 접수되는 애로·민원 및 기술지원 등 의료기관과 국민의 요청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진료정보교류 상담센터 운영
- 일반 민원은 상담센터에서 즉시 처리, 기술·정책·장애 등 전문 문의는 전문기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및 유지보수 사업단에서 처리

□ 운영 체계

< 진료정보교류 상담 운영 체계도 >



-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 총괄
- (전문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 관련 상담 및 민원 대응 업무 관리, 정책 문의 등 전문 문의 대응
- (상담센터) 진료정보교류 관련 상담 1차 접수, 상담 분배 및 처리 수행
- (유지보수 사업단) 표준연계모듈 관련 전문 기술 상담 및 기술지원

2 상담센터 운영

□ 운영현황

- 진료정보교류 상담 콜센터: 1666-7598
-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mychart.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 (경로)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로그인 > 참여마당 > 질문하기(Q&A) > 문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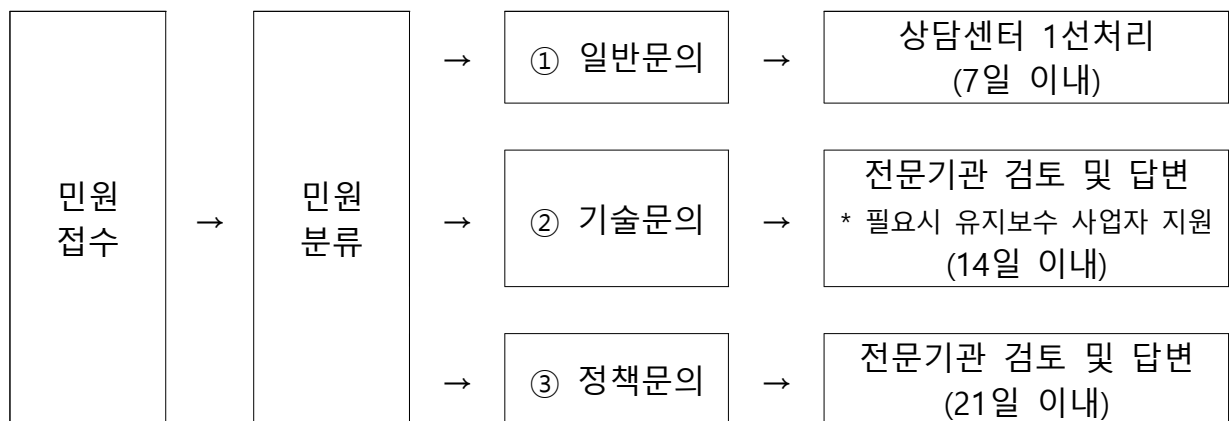
□ 주요 업무

- 온·오프라인 민원 창구 관리 및 상담 응대
- 상담 응대 결과 안내 및 고객 만족도 조사

□ 민원 종류

- 진료정보교류 민원은 ①일반문의 ②기술문의 ③정책문의로 분류하여 접수·처리
- ① (일반문의) 사업 설명(참여 방법 등), 동의 방법, 누리집 이용 문의 등
- ② (기술문의) 시스템 구현, 시스템 연계·오류 보정, 적합성 검증, 표준연계모듈 연계 등
※ 기술문의는 시스템 확인 및 보정, 조치방안 등 탐색 필요하여 시일 소요
- ③ (정책문의) 공모 방법·의료기관 사업 참여 정책·제도 개선 등 정책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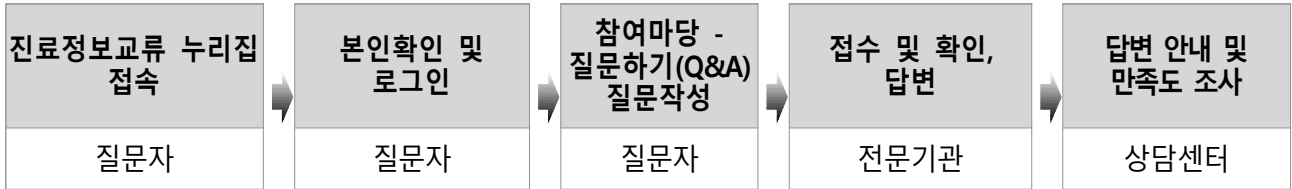
□ 민원 처리절차 및 기한



※ 민원처리 기한에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이용방법

-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질의응답 사용 절차



- (본인확인 및 로그인) 마이차트 사용자별(국민·의료기관) 본인인증 절차 진행
 - (국민)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 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가능
 - (의료기관)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 (질문작성) 질문하기 메뉴에서 '문의하기' → 문의유형 및 분류 입력 → 문의 내용 및 자동입력방지 문자 입력 후 완료*
 - * 답변 시 SMS 발송란에 체크하면 답변 완료 시 등록된 핸드폰으로 SMS 발송
- (접수 및 답변) 상담센터에서 질문 확인, 민원분류 등 접수 처리 후 민원 처리절차에 따라 질문글의 댓글 형태로 답변
- (답변 안내) SMS 수신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답변완료 시 SMS 안내

제5장 사업 평가

1 개요

□ 목적

-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과 제시 및 활성화 수준 파악을 통한 확산 기초자료 활용
- 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 성과에 따른 포상을 통한 참여 의료기관의 활성화 독려

□ 관련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제2호

□ 평가 대상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운영 중인 참여 의료기관

□ 평가 기간

- 당해연도로 한정하고 그 기간은 당해연도를 넘지 않음

□ 성과관리 지표

- 사업계획 수립·계획에 따른 운영협력 의료기관의 확산 및 활성화, 진료정보 교류 내용의 충실성 등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반영

□ 성과관리 지표

- 성과관리를 위한 범위·기간·지표 등은 연도별 별도 공지

□ 기대효과

- 의료진의 신속한 진료 의사결정 지원과 진료 프로세스의 지연 방지
- 의료제공자의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개선
- 진료정보교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의료기관의 업무 효율성 강화
- 포상을 통한 참여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 독려

2 성과관리 방안

□ 자료수집 대상

-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의료기관 성과관리를 위해 정의된 지표

□ 자료생성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및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서 지표에 맞는 데이터 생성

□ 자료추출 및 방법

- 매월 1일, 시스템 자동 생성

□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 관리

- (전문기관) 전문기관 업무 담당자
- (거점 의료기관) 진료협력센터 내 진료정보교류 업무담당자

□ 자료제공

- 전문기관은 성과관리를 위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전문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 관리

- 모니터링 지표는 협의체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변경 가능

구분	성과관리 지표
정량	■ 기능구현의 충실성 ■ 의뢰 건수(송신) ■ 회송 건수(송신) ■ 진료기록요약지 발생 건수 ■ 영상판독소견서 건수 ■ 영상정보 첨부율(%) (영상첨부 / (의뢰 건수 + 회송 건수)) ■ 개인정보동의서 징구건수 ■ 협력 의료기관 수(거점만 해당)
정성	■ 진료정보교류 사업 홍보 및 사업 활성화 노력 ■ 사업추진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업무 협조 ■ 정보보안을 위한 관리체계 및 교육 이행 정도 ■ 협력의료기관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형성(거점만 해당)

※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성과관리 지표 및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서식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변경·해지 신청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 이용 [] 변경 [] 해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종별		
	대표자 성명(법인명)				요양기관 기호		
	소재지 (☎)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연계방식	참여유형		선택사항				
	[] 거점 의료기관						
	[] 협력 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명 :				
전자의무 기록시스템 (EMR) 정보 []	도입방식	[] 자체개발(용역포함)		[] 솔루션제품도입			
	업체명						
	제품명칭						
	진료정보 연계모듈(API) 적용방식	[] EMR 내부에 API 적용 방식 [] EMR 외부에 API를 설치한 후 EMR에서 호출하는 방식					
영상정보시스템 (PACS) 정보 []	업체명						
	제품명 (제품버전)						
	DICOM Q/R	[]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 다음 사항에 협력지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진료정보교류사업 운영 및 확산홍보에 관한 사항
2. 진료정보교류사업 수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진료정보교류 연구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보건의료표준용어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이용·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대표자)

보건복지부장관(전문기관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수행계획서 1부(거점 의료기관) 2. 교류객체등록번호 신청서 1부 ※ 제출서류는 이용 신청 시에만 해당됩니다.
작성 및 주의사항	

1. 신청서상의 각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반려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 승인 이후 전자의무기록의 제품이 변경되거나, 다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사용에 대한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처리기간은 신청 의료기관의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90일 1회 연장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 진료정보교류 교류각체등록번호 등록/폐기 신청서

진료정보교류 교류객체등록번호 등록/폐기 신청서

진료정보교류 교류객체등록번호		[] 등록			[] 폐기
신청기관	기 관 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 소				
신청기관 정보	요양기관등록코드				
	의료기관 유형	[] 의원급	[] 병원급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진료과목 및 의사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EMR) 유형	[] 자체개발 [] 솔루션구매 (제 품 명 :)	청구소프트웨어 유형	[] 자체개발 [] 솔루션구매 (제 품 명 :)	

본 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을 위해 상기와 같이 진료정보교류 교류객체등록번호의 등록·폐기를 신청합니다.

이
아
도

신청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3]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2026년 2월부터 시행(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서식은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참고 바람)

■ 진료정보교류 표준 [별지 제2호서식]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따라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보 주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자

-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송·수신하는 의료기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제공	보유기간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대상자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라.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처방, 진단, 수술, 외래접수, 입·퇴원, 예약, 예방접종, 알리지 및 부작용, 생체신호 및 흡연·음주상태, 법정 전염성 감염병, 환자상태 및 회송사유, 영상정보, 응급처치사항, 전원환자분류 등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 등록된 진료정보	의료기관 전원 시 연속성있는 진료를 위해 전원한 의료기관 으로 진료기록 전송	보유기간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기간
처방, 진단, 수술, 외래접수, 입·퇴원, 예약, 예방접종, 알리지 및 부작용, 생체신호 및 흡연·음주상태, 법정 전염성 감염병, 환자상태 및 회송사유, 영상정보, 응급처치사항, 전원환자분류, 진료일자·상태(외래) 등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진료경과 추적관리를 위해 원 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 전송	보유기간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선택)**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마.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에 관한 사항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기간
<u>외국인등록번호</u>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한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제공	보유기간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 · 이용기간
<u>성명, 주소, 전화번호</u>	<u>보건복지부</u>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u>진료정보교류 사업</u> <u>총괄 및 평가</u>	보유기간 1년
	<u>건강보험</u> <u>심사평가원</u>	<u>진료 의뢰·회송</u> <u>급여비용</u> <u>심사·지급</u>	보유기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사. 민감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 · 이용기간
처방, 진단, 수술, 외래접수, 입·퇴원, 예약, 예방접종, 알러지 및 부작용, 생체신호 및 흡연·음주상태, 법정 전염성 감염병, 환자상태 및 회송사유, 영상정보, 응급처치사항, 전원환자분류 등 진료정보교류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 사업 총괄 및 평가	보유기간 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 의뢰·회송 급여비용 심사·지급	보유기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아.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 · 이용기간
외국인등록번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 사업 총괄 및 평가	보유기간 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 의뢰·회송 급여비용 심사·지급	보유기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자. 기타 고지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처리 목적	처리 근거
주민등록번호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제공	「의료법」 제21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20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본인(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4]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부분전체 철회서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서

접수일	접수기관		처리기간	10일 이내	
동의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철회내용	[] 부분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동의 철회 요구)	※ 동의를 철회하는 의료기관명을 나열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 부분 진료과	진료과명 (동의 철회 요구)	[] 비뇨기과 [] 산부인과 [] 정신건강의학과 [] 기타 ()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 전체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환자(대리인 또는 보호자) 이름 :

연락처 :

환자와의 관계 :

작성 방법

1. '법정대리인' 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진료정보교류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부분 의료기관' 란에 '√' 표시를 하고, 의료기관명에 철회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명칭을 나열하여야 합니다. '√' 를 하지 않거나 의료기관명을 나열하지 않으면 동의를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진료정보교류에 대해 일부 진료과에 대해서만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부분 진료과' 란에 '√' 표시를 하고, 진료과명에 철회하고자 하는 진료과명을 나열하여야 합니다. '√' 를 하지 않거나 진료과명을 나열하지 않으면 동의를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4. 진료교류정보 전체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전체' 란에 '√'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5]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사전협의 요청서

가. 요청기관 기본 정보

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기관 주소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나. 사업참여 관련 상세 정보

구분		내용	
기관 유형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의원	☐ 치과병의원
		☐ (요양) 병원	☐ EMR 업체
참여 유형		☐ 거점 의료기관	☐ 협력 의료기관
1) 동반참여 협력 의료기관수		()개소	
전자의무 기록시스템 (EMR) 정보	도입 방식	☐ 자체개발 ☐ 솔루션 제품 도입	
	2) 업체명	2) 제품명	
	개발환경	☐ .Net framework (버전기입)	☐ JDK (버전기입)
		☐ Delphi (버전기입)	☐ PowerBuilder (버전기입)
		☐ VB (버전기입)	☐ 기타 (버전기입)
	개발언어	☐ C# (버전기입)	☐ Java (버전기입)
☐ Delphi (버전기입)		☐ PowerScript (버전기입)	
☐ VB (버전기입)		☐ 기타 (버전기입)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PACS) 정보	3) 영상정보교류 참여 여부	☐ 참여 ☐ 미참여	
	Q/R 모듈 보유 여부	☐ 보유 ☐ 미보유	
	업체명	제품명	
4) 네트워크		☐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구분하여 사용 (망 분리) ☐ 인터넷망으로 사용 ☐ 기타 ()	
전산실 운영	운영 방식	☐ 자체운영 ☐ 외주용역	
	5) 전산 담당	담당자명 () 연락처 ()	
	5) 보안 담당	담당자명 () 연락처 ()	

1) 거점 의료기관,으로 참여 시에만 기입, 협력 병의원 동반참여 필요 (거점:50개소 이상)

2) EMR 자체개발 기관의 경우에는 기재 생략

3) 영상정보교류 적용을 위해서는 영상정보교류 연계서버 필요 (진료정보교류 연계서버와 함께 이용 가능)

4)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 진료정보교류 연계서버 필요

5)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없을 경우 기재 생략

[서식6]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의료기관 간 표준협약서

진료정보교류사업 표준협약서 (거점 의료기관 - 협력 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 의료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진료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력·지원한다.

- 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 ②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한 자료의 외부보관에 관한 사항

제3조(비용부담) 양 기관은 제2조에 의한 협약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 이외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각 사안 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환자 및 의료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본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하며,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해지를 원하는 날

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의사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중이라도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협약효력) ○○○○(거점 의료기관)은 제5조의 기간 동안 아래 첨부된 표준협약서식에 따라 ○○○○(협력 의료기관)과의 표준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의료기관)은 ○○○○(거점 의료기관)에게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 및 변경) 본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협약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거점 의료기관

○○○○○○(기관명)

원 장 ○ ○ ○ (인)

협력 의료기관

○○○○○○(기관명)

원 장 ○ ○ ○ (인)

[서식7] 거점 의료기관-협력 의료기관 현판 표준 규격

□ 표준 규격

- 현판크기 : 290mm × 210mm (A4 크기)
 - 내용
 - 상단 : 보건복지부 CI + '진료정보교류사업 협약기관'
 - 중앙 : 협력 병·의원 기관명
 - 하단 : (거점 의료기관 BI) + 거점 의료기관명 + '진료협력병의원'
 - ※ 상단, 중앙 문구는 필수, 하단 문구는 수정·생략 가능
 - 글자
 - 폰트 : 보건복지부(16040911), 그 외(HY전고딕)
 - 크기 : 상단(39), 중앙(85), 하단(42)
 - 여백 : 장평(100%), 자간(0)
 - 현판 배경 이미지, 색은 제한 없음
- * 거점-협력의료기관 간 홍보를 목적으로 규격을 정의, 현판 제작시 참고

□ 제작 예시



[서식8]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이용변경해지 신청서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API) ☐ ☐ ☐ 이용
☐ ☐ ☐ 변경
☐ ☐ ☐ 해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 EMR업체	EMR업체명			
	대표자 성명(법인명)		사업자 번호	
	소재지 (☎ -)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정보	제품명칭	
	제품버전	
	개발환경	☐ Java ☐ Delphi ☐ VB ☐ C# ☐ 기타()
	진료정보 연계모듈(API) 적용방식	☐ EMR 내부에 API 적용 방식
		☐ EMR 외부에 API를 설치한 후 EMR에서 호출하는 방식

☐ 다음 사항에 협력·지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1. 진료정보교류사업 배포·교육 등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 4. 국가보건의료표준용어 적용 관리에 관한 사항 |
| 2. 진료정보교류사업 보안사항에 관한 사항 | 5.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업데이트 반영에 관한 사항 |
| 3. 진료정보교류 연구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 | 6. 진료정보교류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

「의료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표준연계모듈(API)의 이용·변경·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개설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전문기관장) 귀하

작성 및 주의사항

- 신청서상의 각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반려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API) 이용 승인 이후 전자의무기록의 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사용에 대한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9] 표준연계모듈(API) 적용에 대한 보안서약서

표준연계 모듈(API) 적용에 대한 보안 서약서

업 체 명			
부 서 명			
성 명		직 위	

상기 본인은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를 위한 표준연계모듈(API) 적용 및 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본인은 진료정보교류 표준연계모듈 적용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본인은 취득한 비밀 및 중요 사항에 대해 근무기간은 물론이고 탈퇴(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 본인은 상기 사항을 위반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부장관(전문기관장) 귀하

[참고1] 거점 의료기관 현황

(2025.12월 기준)

거점	기관	진료협력센터 대표번호
서울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02-2258-5595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091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02-440-7772
	강북삼성병원	02-2001-1100
	건국대학교 병원	02-2030-7088
	경희대학교 병원	02-958-9643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02-2626-1681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02-920-5894
	삼성서울병원	02-3410-3081
	서울대학교 병원	02-2072-2077
	서울대학교치과병원	02-2072-0700
	서울아산병원	02-3010-7766
	세브란스병원	02-2228-9889
	중앙대학교 병원	02-6299-1139
	중앙보훈병원	02-2225-4567
	한양대학교 병원	02-2290-9609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02-709-9900
경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031-8099-6477
	국립암센터	031-920-115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031-900-3058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031-787-2030
	분당차병원	031-780-5554
	부천세종병원	032-340-1373
	아주대학교 병원	031-219-4646
	오산한국병원	031-379-8485
	한림대학교성심병원	031-380-6050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032-621-5554
	명지병원	031-810-5030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031-961-8888
인천	가천대학교 길병원	032-460-3977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32-280-6312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032-500-0236
	인천세종병원	032-240-8523
	인하대학교 병원	032-890-3304

거점	기관	진료협력센터 대표번호
강원	강릉아산병원	033-610-2900
	강원대학교병원	033-258-227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033-741-1717
충청	인화재단 한국병원	043-259-2000
	충남대학교병원	042-280-7214
	충북대학교병원	043-269-7723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	043-230-6325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041-550-7101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041-570-2790
대구.경북	경북대학교병원	053-200-4611
	계명대학교동산병원	053-258-6515
	안동병원	054-840-0433
	칠곡경북대학교병원	053-200-333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053-650-3073
	영남대학교병원	053-620-4423
부산.경남	경상대학교병원	055-750-9053
	고신대학교복음병원	051-990-3030
	동아대학교병원	051-240-2421
	부산대학교병원	051-240-798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055-360-1023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051-890-6937
	울산대학교병원	053-250-7570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온병원	051-607-0850
전라.광주	광주기독병원	062-650-5115
	원광대학교병원	063-859-2225
	전남대학교병원	062-220-5409
	전북대학교병원	063-250-2793
	조선대학교병원	062-220-3989
	화순전남대학교병원	061-379-7379
	대자인병원	063-240-2518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064-717-2111

[참고2] 진료정보 표준연계모듈 적용 EMR 현황

(2025.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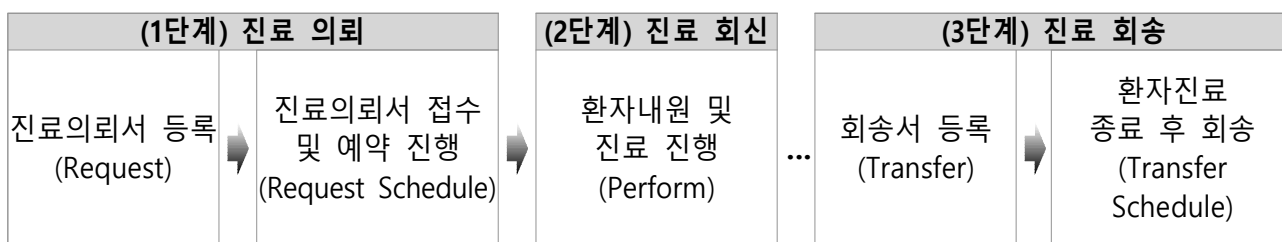
연번	EMR 업체명	EMR 제품명
1	이디비주식회사	Medi-Ses
		Ses
		원차트
2	메트로소프트	Metro-HIS
3	헥톤프로젝트	닥터스
		닥터브레인
4	비트컴퓨터	HIB
		U-Chart
		BitnixHIS EMR
		CLEMR
		A 차트
		비트플러스
5	이온엠솔루션	E-CHART
6	전능아이티	아담스
7	이지스헬스케어	NixPen
		eghis
8	이지케어텍	Bestcare2.0
		엣지앤넥스트
		국립병원정보시스템(MEDIRO)
9	다대소프트	K차트
10	다솜메디케어	차트매니저
11	굿닥	차트프로2000
12	(주)엔지테크	NGTMediplus
13	엠오디시스템	MEDEMR
14	유비케어	의사랑
15	유진의료정보시스템	Fullcos
16	클릭소프트	New클릭
17	메디칼소프트	히포크라테스ASP
18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Medios+

연번	EMR 업체명	EMR 제품명
19	중외정보기술	ONTC-HIS
20	평화IS	nu
21	씨소프트(씨젠의료재단)	씨차트
22	이메디정보기술	EM-HIS
23	아미스테크놀로지	Pointnet-EMR
24	(주)엠씨씨	MCC Series Hospital
25	지누스	PHOENIX
26	오스템임플란트	하나로
		두번에
		One-Click
27	이헬스플러스	바이케어
28	(주)엠시스텍	통합의료정보시스템
29	주식회사 엠디소프트	IPLUS
30	(주)엠에스인포텍	MIT_CHART
31	헬스허브	HPMS
32	후지쯔	EGMAIN-KF
33	네오소프트뱅크	Sense Plus
		sense
		Medi chart
		네오차트 이플러스
		(주)엔지테크
34	(주)엔지테크	Chameleon
35	전능아이티	SMART NC
36	에스아이엠테크	Nouveauemr
37	세나클소프트	오름차트
38	텐소프트	아이차트
3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PHIS

[참고3] 전자교류문서 상태정보

□ 개요

-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통해 진료 의뢰·회송된 교류문서의 송·수신 등에 대한 상태정보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에서 확인 가능
- 교류문서 상태는 업무절차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되며, 단계별 세부상태로 구분



- 교류문서 상태정보는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이벤트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되는 자동처리와 이용자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에서 직접 변경해야 하는 수동처리 방법으로 구분

□ 단계별 세부내용

- (1단계) 진료 의뢰

진 료 의 뢰	● 진료의뢰서 등록(Request)		
	상태정보	내용	처리 방법
	진료의뢰서 전송	진료 의뢰하는 의료기관에서 생성한 진료의뢰서를 의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전송	자동
	진료의뢰서 확인	진료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 조회 완료	자동
	진료의뢰서 전송 취소	진료의뢰서를 보낸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를 취소	자동
	● 진료의뢰서 접수 및 예약 진행 (Request Schedule)		
	상태정보	내용	처리 방법
	예약 완료	진료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의뢰환자의 진료 예약 완료	수동
	예약 취소	진료 의뢰 환자가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진료 예약 취소	수동
	환자 진료 진행 중	진료 의뢰 환자가 의뢰받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진행 중	수동

● (2단계) 진료 회신

진 료 회 신	● 환자 내원 및 진료 진행 (Perform)		
	상태정보	내용	처리 방법
	진료회신서 전송	진료 의뢰 환자의 치료에 따른 진료 정보를 의뢰를 보낸 의료기관으로 전송	자동
	진료회신서 확인	진료의뢰서를 보낸 의료기관에서 진료회신서 내용 조회	자동
	진료회신서 전송 취소	진료회신서 전송 기관에서 진료회신서 전송 취소	자동

● (3단계) 진료 회송

진 료 회 송	● 진료회송서 등록 (Transfer)		
	상태정보	내용	처리 방법
	진료회송서 전송	진료 회송하는 의료기관에서 생성한 진료회송서를 회송받는 의료기관으로 전송	자동
	진료회송서 확인	진료 회송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회송서 조회	자동
	진료회송서 전송 취소	진료회송서를 보낸 의료기관에서 진료 회송을 취소	자동
	● 진료회송서 접수 및 예약 진행 (Transfer Schedule)		
	상태정보	내용	처리 방법
	예약완료	진료 회송 받은 의료기관에서 회송 환자의 진료 예약 완료	수동
	예약취소	진료 회송을 보낸 의료기관에서 진료회송서 내용 조회	수동
	환자 진료 진행 중	진료 회송 환자가 회송 받은 의료기관에서 내원하여 진료 진행 중	수동

※ (자동)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변경, (수동) 의료기관에서 추가 개발하여 알림정보 입력

※ 진료의뢰서 · 회신서 · 회송서의 전송 실패 및 오류 시 전문기관(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콜센터에 문의

[참고4] 진료정보교류 누리집(마이차트) 가입절차

- 마이차트 온라인 진료정보교류 동의 메뉴 이용
 - 마이차트 → 서비스이용 → 온라인 진료정보교류 동의



- 서비스 이용(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란 작성 및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이용

온라인 진료정보교류 동의

서비스 이용(변경)신청

휴대폰 본인 확인

서비스 이용(변경)신청을 하시려면, 로그인 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본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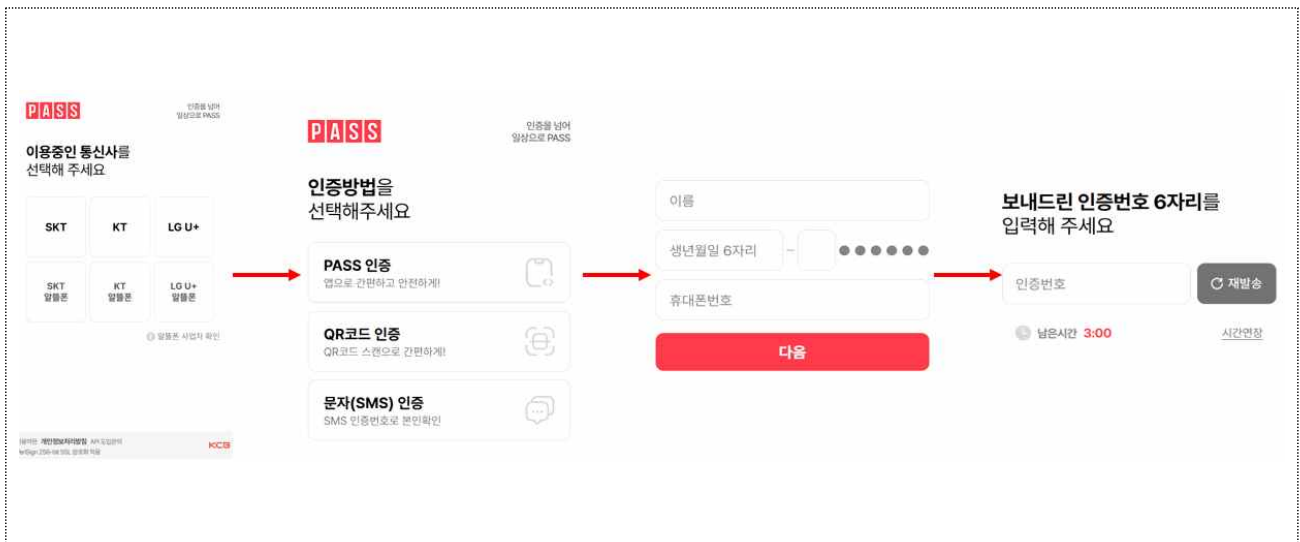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로 서비스이용(변경)신청완료 후에는 다시 본인확인을 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인증 받으신 분은 모든 메뉴를 재인증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하여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본인 확인 용도로만 활용합니다.

● 본인인증 진행

- 이용중인 통신사 버튼을 클릭하고 인증방법 선택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입력 후 '다음' 진행
 - 입력한 휴대폰번호의 인증번호 6자리 입력 후 '인증'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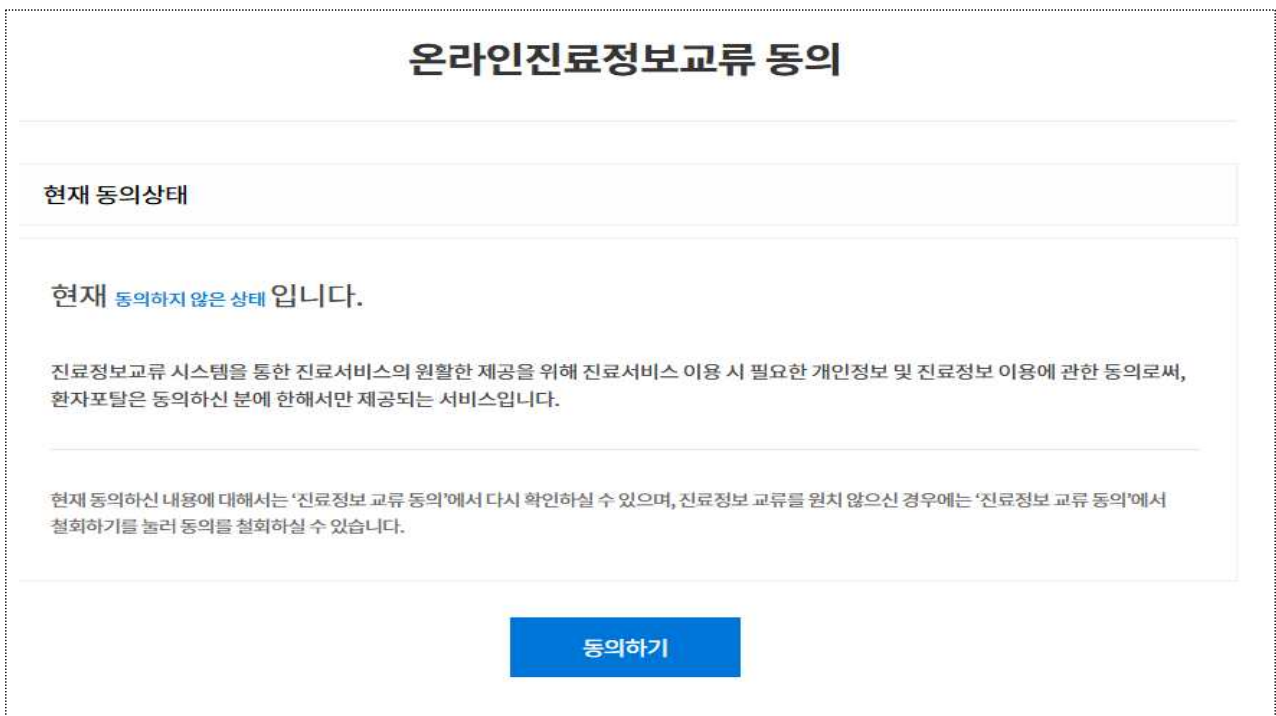


본인인증 절차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중인 통신사를 선택해 주세요**: SKT, KT, LG U+ 및 알뜰폰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알뜰폰 선택 시 '알뜰폰 가입자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인증방법을 선택해주세요**: PASS 인증 (앱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QR코드 인증 (QR코드 스캔으로 간편하게), 문자(SMS) 인증 (SMS 인증번호로 본인확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정보 입력**: 이름, 생년월일 6자리,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보내드린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남은시간 3:00'과 '시간연장' 버튼이 표시됩니다.

● 온라인진료정보교류 동의

- 현재 동의상태 확인 및 동의하기



온라인진료정보교류 동의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진료정보교류 동의

현재 동의상태

현재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진료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로써, 환자포털은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진료정보 교류 동의'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진료정보 교류를 원치 않으신 경우에는 '진료정보 교류 동의'에서 철회하기를 눌러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기

- 환자정보 입력 후 동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락처, 수신동의, 주소란 입력 후 동의

환자정보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자
☐ 여자

· 연락처

010

▼

-

· 연락처 수신동의

☐ 수신
☐ 미수신

※ 수신동의시 진료정보교류 신청 및 진행사항에 대한 문자 알림을 제공합니다.

· 주소

주소찾기

나머지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작성일자 : 2025년 12월 12일

뒤로가기

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합니다

온라인진료정보교류 동의

현재 동의상태

님은

2025년 12월 12일 진료정보교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습니다.

동의 및 철회 내역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상세보기

· 동의날짜: 2025년도 12월 12일

· 동의상태: 입관동의

메인으로

[참고5] 개인정보 파일 현황

연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간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진료정보교류 참여자 정보	1년 또는 동의 철회 시 까지
2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 정보	1년
3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1년
4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의료진 정보	회원 탈퇴 시까지